

연구보고서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이상신·노연희·최요한·백승진·우민희

【책임연구자】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백승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우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저 자 고 경 환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고려씨앤피

정 가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62-2 93330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매년 공공부분의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개혁 이후 기업(사회공헌활동), 민간모금기관 등이 복지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제하는 국가의 경우 자발적 민간지출이 증가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충하고 있다. 그 예로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이 1993년 이래 2005년까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공공지출을 보완하고 자발적민간지출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모금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영 실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현재 모금활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인간 정보공유로 배분의 효과성과 형평성 확보 등 나눔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결산서를 공시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재정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결산서 공시에 대해 노력한 한국가이드스타와 국세청의 결과가 금년부터 본궤도에 진입한 것에 기인한다. 2015년부터는 자산 5억원 이상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회복지 공익법인은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결산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스스로 공시한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및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들이 주목된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서울시립대학교 이상신 교수, 카톨릭대학교 노연희 교수, 원내 최요한 전문연구원, 백승진 연구원, 우민희 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 호서대학교 김형수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원내 강혜규 연구위원과 김미숙 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에는 세 종류의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으며, 각 장 또는 절의 서술내용과 자료의 수집가능성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 2014년 기준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공시자료입니다.
 - ‘제4장 제1절, 제2절, 부록 4’에서 사용
- 2014년 기준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명단을 대상으로 모금 및 배분 관련 본 연구에서 별도 조사한 자료입니다.
 - ‘제4장 제3절’에서 사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발적민간복지지출 추계를 위해 조사한 민간기부금단체의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로, 3개 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고경환 외, 2011)』
 -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고경환 외, 2012)』
 -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고경환 외, 2013)』
 - ‘제3장 제4절, 제4장 제4절’에서 사용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목적	1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15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7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23
제3절 타법(他法) 단체와 비교	25
제4절 요약 및 소결	38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의 역할 및 경향	43
제1절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	46
제2절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54
제3절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과 역할	60
제4절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경향	69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현황 분석	91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현황 분석	93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분석	99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115
제4절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4
제5장 모금과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131
제1절 모금측면의 개선방안	133
제2절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137
참고문헌	143
부 록	149
부록 1.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149
부록 2. 법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157
부록 3.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조사	162
부록 4. 기부금 및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164

표 목차

〈표 2- 1〉 공익법인의 유형과 설립 근거법	21
〈표 2- 2〉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27
〈표 2-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비교	35
〈표 3- 1〉 공공부문과의 관계와 비영리조직의 유형	49
〈표 3- 2〉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53
〈표 3- 3〉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66
〈표 3- 4〉 민간모금조직의 수입현황(2012년)	71
〈표 3- 5〉 민간모금조직의 지출현황(2012년)	72
〈표 3- 6〉 분석대상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74
〈표 3- 7〉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액 현황	75
〈표 3- 8〉 총수입액 중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76
〈표 3- 9〉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 비전 및 주요 배분사업 내용	78
〈표 3-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별 배분액 추이	80
〈표 3-11〉 구세군자선냄비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81
〈표 3-12〉 아름다운재단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83
〈표 3-13〉 대한적십자사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3
〈표 3-14〉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업유형 지출추이	84
〈표 3-15〉 글로벌유니세프 사업유형별 배분비율	85
〈표 3-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6
〈표 3-17〉 월드비전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6
〈표 3-18〉 굿네이버스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6
〈표 3-19〉 바보의 나눔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87
〈표 4- 1〉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항목	94
〈표 4- 2〉 소재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관 수	96
〈표 4- 3〉 설립년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97
〈표 4- 4〉 기부금단체유형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97

〈표 4- 5〉 사업대상별 사회복지 공익법인(복수응답)	98
〈표 4- 6〉 사업대상 수별 사회복지 공익법인 수	99
〈표 4- 7〉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101
〈표 4- 8〉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2
〈표 4- 9〉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3
〈표 4-10〉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3
〈표 4-11〉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4
〈표 4-12〉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104
〈표 4-13〉 기부금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상세 현황)	106
〈표 4-14〉 소재지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07
〈표 4-15〉 설립년도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08
〈표 4-16〉 기부금단체유형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08
〈표 4-17〉 사업대상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09
〈표 4-18〉 사업대상 수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110
〈표 4-19〉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111
〈표 4-20〉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2
〈표 4-21〉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3
〈표 4-22〉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3
〈표 4-23〉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4
〈표 4-24〉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114
〈표 4-25〉 모금목적 관련 빈도분석	116
〈표 4-26〉 모금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116
〈표 4-27〉 모금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117
〈표 4-28〉 모금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18
〈표 4-29〉 기부자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18
〈표 4-30〉 모금액 사용방식 관련 빈도분석	119
〈표 4-31〉 배분형태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0
〈표 4-32〉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0

〈표 4-33〉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121
〈표 4-34〉 배분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121
〈표 4-35〉 배분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122
〈표 4-36〉 사업성과측정 관련 빈도분석	123
〈표 4-37〉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123
〈표 4-38〉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124
〈표 4-39〉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	127
〈표 4-40〉 기부금 수입금액 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29

부표 목차

〈부표 3-1〉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조사	162
〈부표 4-1〉 기부금의 설명요인 분석	165
〈부표 4-2〉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166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24

[그림 2-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31

[그림 3-1] 비영리조직의 유형 63

Abstract <<

The Fiscal Condi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e research private fundraising activities to expand the voluntary private spending an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on public spe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fiscal management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whose main role is the private sector fundraising and giving some ways to improve the realit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financial welfare and solve the social problems.

The result of this study boils down to that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is 1,489 and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is 1.7706 trillion won in 2014. Approximately 60% of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consists of the achievement of the top 10 fundraising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amount of spending comprises the operating expense with 60.6% and the administrative expense with 39.4%. The donation income increased by 12.6% as people who are in charge of fundraising increased by 1 person in the analysis of how people who are in charge of fundraising are affecting donation income(significant at 0.01% level).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공공부문의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개혁 이후 기업(사회공헌활동), 민간모금기관 등이 복지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의 공공지출을 내실화하고 자발적민간지출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모금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영 실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직접 조사했던 방법을 지양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사회복지법인의 결산서로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모금과 배분관련 개선방안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앞으로 공공재정의 증가압력을 보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모금과 후원금 모집 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반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들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법인들과 경쟁과 협력,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대응 등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는 시점에 사회복지법인들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주요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민간모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2. 주요 연구결과

지난해 100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10개 대규모 모금조직들은 1조원에 달하는 민간자원을 모금하였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모금액의 약 60%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개 조직의 전체 모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드비전이 약 14~16% 그리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굿네이버스가 각각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익법인(1,489기관)의 총 수입금액은 4조 3,855억원(2014년)으로 모금을 통한 기부금 수입이 40.4%(1조 7,706억원)로 정부 보조금 수입 28.2%(1조 2,383억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조직 중 대규모 모금을 진행하는 공동모금회 및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재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도 지출 총액이 4조 85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가 60.6%, 사업관리비 39.4%로 나타났다. 사업비 1단위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관리비의 단위는 서울이 가장 낮은 0.33이고, 전북이 가장 높은 7.17로 나타났다.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금전담인력이 1명 증가할 때 기부금 수입이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01% 수준에서 유의). 또한 모금겸무인력이 1명 증가할 때는 기부금 수입이 14.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수준에서 유의). 또한 후원자 관리 중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를 할 때 기부금 수입이 2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수준에서 유의).

3. 결론 및 시사점

지금껏 민간모금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주가 연구자에 따라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해석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민법 32조)이며,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이고 재단법인(사회복지사업법)으로 설정한 결과 2014년도 1,491개 법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총수입액(4조 3,855억원) 중 기부금수입은 40.4%(1조 7,706억원), 정부보조금은 28.2%(1조 2,383억원)로 기부금이 정부보조금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모금액 중 10개 대규모 조직들이 약 60%(약 1조원)를 모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모금하지 않는 법인(437개)을 제외하면 약 1%의 법인이 60%를 모금함을 알 수 있다.

배분 측면을 보면 사회복지관련 조직들은 저소득층, 노인, 가족 등 대체로 기존의 사회복지영역에 배분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분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혁신을 미션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숫자도 작을뿐더러 규모도 비교적 작아 이번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금활동에서는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낮음을 보이지만, 배분활동은 주로 정부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기존의 사회복지영역을 보완하면서 사회에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보충적 관계로의 변화도 요구된다.

*주요용어: 사회복지법인, 재정운용, 모금과 배분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1절 연구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매년 공공부문의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저성장 사회로 진행되면서 사회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학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개혁 이후 기업(사회공헌활동)과 민간모금기관 등이 복지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지출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국가의 경우 자발적 민간지출이 증가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1993년 이래 2005년까지 공공지출이 감소할 때 자발적민간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미국과 독일은 공공지출이 정체되어 있을 때 자발적민간지출이 증가하였다. 자발적민간지출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업과 제3섹터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근로연계급여 등으로, 제3섹터는 민간모금, 비영리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원의 구성비중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3섹터는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이 90%를, 제3섹터는 10% 정도이다.

앞으로 공공지출을 보완하고 자발적민간지출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모금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 모금활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인 간 정보공유로 배분의 효과성과 형평성 확보 등 나눔 활동을 강화하는 역량강화가 요구

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들은 그들 간 경쟁, 나아가 영리단체들과 경계선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경쟁과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역량강화 내용으로는 효율적 조직운영, 전문모금활동,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 효과적 배분활동, 그리고 기부자와 대중 중심의 서비스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를 공시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익법인공시가 한국가이드스타와 국세청이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결산서 공시 노력으로 금년부터 기본제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자산 10억원 이상,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회복지 공익법인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결산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자산 5억원 이상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들이 스스로 공시한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과거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따라 개발한 조사표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들의 협조를 통해 작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설정에도 용이하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신뢰성도 한층 높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모금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고 모금 및 배분관련 세부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목적

첫째, 복지재정의 한계를 보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모금과

후원금 모집 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반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들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법인들과 경쟁과 협력, 사회서비스시장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대응 등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는 시점에 사회복지법인들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민간모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직관리와 모금전략의 강화, 배분에 있어 공공부문과의 차별성, 배분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민간모금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민간모금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조사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의 정의와 범주 및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의 활용성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타법단체와 비교 등을 파악한다. 민간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현황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민간자원 모금과 배분에 대해 선행연구와 기존 조사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국세청홈텍스에 결산서를 공시한 사회복지공익법인의 일반 및

재정현황을 분석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실태분석은 규모별, 지역별, 설립 역사별, 설립 근거법별 등을, 재정운용현황 분석은 수입과 지출현황과 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들을 분석한다.

넷째,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 결산서로 일반사항과 재정현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시 결산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표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추가부문은 먼저 모금의 목적, 전담인력 그리고 모금관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모금내용, 다음 모금액의 사용방법, 사용 우선순위, 전담인력 등으로 구성된 모금액 사용, 끝으로 최근 이슈로 대두되는 기관의 성과측정 내용, 필수재정보고 외 공개여부 등이다.

다섯째, 본 조사 분석을 통하여 민간모금과 배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실태측면인 자원의 효율적 확충, 기부자 만족도 제도와 모금증가를 위한 기부자관리 강화 등의 분석을 통한 실행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위, 고유목적과 기능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를 분석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론적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를 살펴보고 범주를 명확히 한다. 민간모금 관련 수입과 지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대표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결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결산자료는 검토를 거쳐 국세청홈텍스에 수록된 사회복지 공익법인 1,491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모금과 배분)의 내용, 세부 영역별 모금재원의 규모와 구성 등을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세청홈텍스에 없는 추가항목에

대해 별도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등의 설정을 위해 사회복지법인분야 전문가(학계, 복지계, 정부 등)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원고 위탁도 실시한다.

제 2 장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제3절 타법(他法) 단체와 비교

제4절 요약 및 소결

2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형식적 사회복지법인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¹⁾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호).

위와 관련하여 형식적 사회복지법인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인 개념이 문제될 수 있다. 형식적 사회복지법인이란, 그 외부 형식에 의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된 경우를 말한다. 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서 열거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반해 실질적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느냐 여부에 의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설립등기로 파악하느냐(형식설)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내용만으로 파악하느냐(실질설)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사회복지법인은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실질적 사회복지법인은 전체를 포섭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등기가 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②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기 힘들고, ①의 경우가 문제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설립 근거법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동법은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6조).”고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전문예술법인 등과 설립근거법에 차이가 있다. 참고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 개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²⁾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위 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익법인이라는 개념 중에서,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법인만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이며(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종교법인,³⁾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⁴⁾ 의료법상의 의료법인⁵⁾, 문화예술지원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⁶⁾ 등도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등과 다르다. 공익법인을 공익 유형과 설립근거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3)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종교법인 형태가 아닌 종교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종교법인은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종교법인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 4) 예컨대, 사립학교법 제10조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2013.3.23.>
1. 목적(이하 생략)
- 5) 의료법 제48조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6)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표 2-1〉 공익법인의 유형과 설립 근거법

공익법인 유형	설립 근거법
학술, 장학, 자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종교	민법 및 기타 특별법
교육	사립학교법
의료	의료법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민법 및 기타 특별법

3. 사업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다. 동법 제2조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그 사업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조),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노인복

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의료법인(의료법 제49조) 등과 사업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4.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사회 일반의 이익 즉 공익에 공여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으로 된 것’을 말하지만,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 때문에 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인정(법인세법 제29조), ③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 특례(법인세법 제62조), ④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법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세법 제12조 제1항16호, 동시행령 제37조), ⑤ 지방세법상 토지관련 세목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공익의 개념은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에서 그 공공성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고(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항).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1.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바쳐진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인정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재산을 설립자 등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구별된다. 또 재단법인에서는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사회복지법인은 분류상 재단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은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두고 있고(동법 18조),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히 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동법 제23조),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등(동법 제27조) 재단법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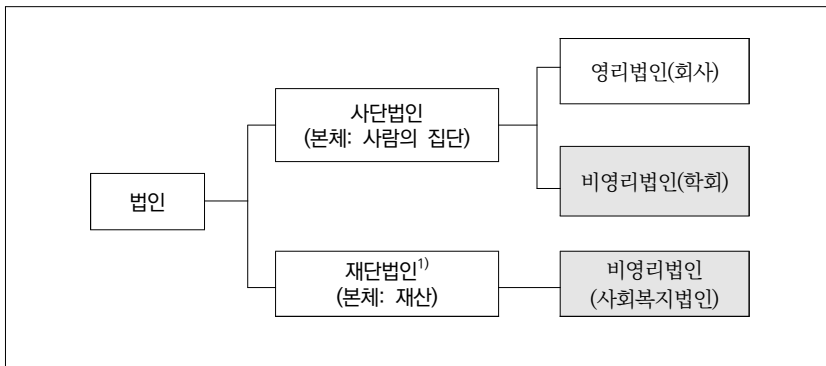
2.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의하며, 영리법인의 설립은 상법에 의한다. 영리·비영리의 구별 기준은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재산을 구성원(출자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

업을 할 수 있으나 그를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구성원(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반하여, 영리법인은 그 획득한 이익을 구성원인 출자자에게 이익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역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⁷⁾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유사목적 법인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비영리법인의 특징이다.⁸⁾ 이러한 특징을 사회복지법인에 대응하여 표시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주: 1)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음.

7)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익법인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고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근거가 필요하다. 즉 비영리법인이 곧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⁹⁾ 학술, 자선, 기예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학술, 자선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1975년에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과는 세제 혜택이 다르고 주무관청의 감독과 법인의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취지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결국 비영리법인 중 일부가 공익법인이 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의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등으로 그 사업 내용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의 <표 2-1>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제3절 타법(他法) 단체와 비교

1.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

9)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제6조), 조세감면(제10조), 우편요금의 감액(제11조)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가 시·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개념상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이 중복될 가능성은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그런데 ④의 요건은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에는 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이 아닌 경우 즉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 등과 구별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거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법적 성격	사단	재단
상시구성원 수	100명 이상	불필요
법인격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필요(설립등기)
세제혜택	있음	있음

2. 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가. 개관

민법의 비영리법인 규정이나 그 특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그러한 법인의 설립절차, 운영, 해산 등을 규정하는 규범들이다. 즉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해산하고 그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조세징수를 위한 법률관계 또는 조세지원을 위한 법률관계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의 목적이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의 그것과 다르다. 즉 예컨대 민법의 비영리법인과 세법(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세법 목적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의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세법상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다르

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관한 세법 규정을 살펴본다.

나.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의제법인,¹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비해서는 개념 범위가 넓다.¹¹⁾ 이것은 납세의무를 정하고자 하

10)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登記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登記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이하 생략)

11)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을 규정한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제18조(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제2편(내국법인의 납세의무)제3장(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

는 세법상의 목적 때문에 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개념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세법상 영리법인과 다른 취급을 받는다.

다. 공익법인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공익법인이 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개념은 비영리법인보다 좁은 범위이고, 이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에 규정이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¹²⁾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위가 공익법인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2)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하여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를상의 공익법인에 비해서 그 범위가 당연히 넓다. 왜냐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외에 특별법에서 정한 공익목적 사업을 행하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라. 성실공익법인

상증세법에는 성실공익법인이라는 별개의 개념이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식의 출연이나 취득 부분에 대해 공익법인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한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¹³⁾ 주무관청을 통하여 매 5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좀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상증세법 제16조 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5항). 성실공익법인은 다음 8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제16조 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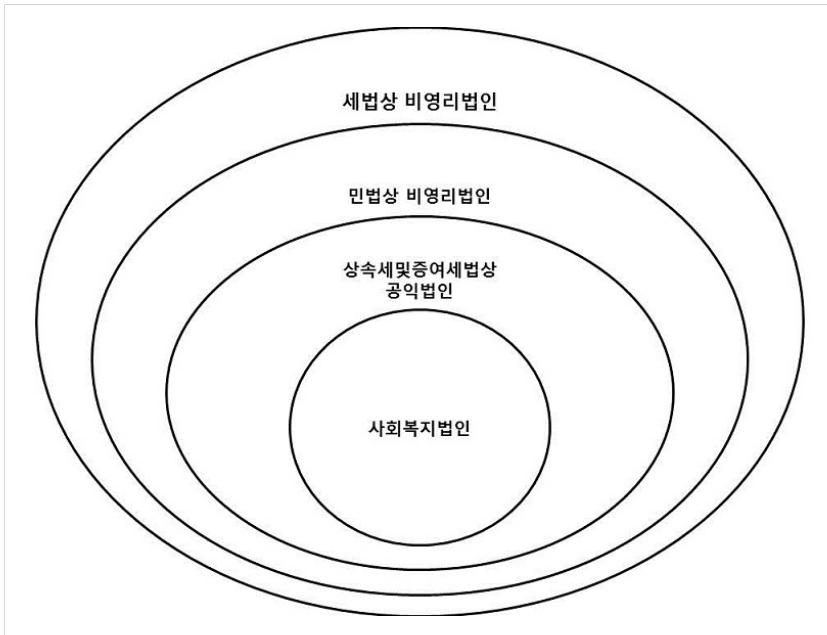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 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④ 특수관계법인의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이행할 것, ⑥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⑦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할 것, ⑧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등을 행할 것.

13) 예컨대 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취득만이 인정되지만 성실공익법인은 10%가 인정된다.

마. 소결론

비영리의 개념, 공익의 개념은 법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개념이 가장 넓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 공익법인의 개념이 가장 좁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게는 법인세법이나 상속세법 등이 적용되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2-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3.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로 나뉘며,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즉 총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비하여 세법상 유리하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되어 있으며,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고 지출 용도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다.

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¹⁴⁾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요약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및 그 지출용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 법인세법 제24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관련 단체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에서 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비해 공익성이 높아서 좀 더 많은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이나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등이 속한다.

법정기부금 역시 공익법인의 종류 및 지출용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개 그 법인의 설립에 개별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였으나, 6호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바보의 나눔만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¹⁵⁾

법정기부금단체 관련 법인세법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4.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단체

15) ④ 영 제36조의 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 7과 같다(2013. 2. 23. 개정). 별표 6의6에서 위 두 개의 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중 기획재정부로부터 반기별로 지정받는 것이다.¹⁶⁾ 이 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자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

16)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공고(<http://www.mosf.go.kr/law/law04.jsp?boardType>) 부분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현황 등을 알 수 있으며 2014년 12.31 현재 355개이다.

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이러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는 개념상 차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제 혜택의 범위에 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에 대해서만 기부금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공제가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와 구별된다. 그 차이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법인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도 공제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야만 기부금공제를 할 수 있다.

<표 2-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비교

구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등록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법(사회복지사업법)
등록 대상	개인, 법인	비영리공익법인
기부금 공제대상	반드시 개인이어야 함	개인, 법인 모두 가능

5. 기부금품모집법상의 모집단체

가. 기부금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표기

한다)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회원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無償) 출연(出捐)행위를 기부(寄附)라고 하며, 금품이란 금전과 물품의 출입말로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국 ‘기부로 인(因)하여 취득하는 금전(金)이나 물건 중 부동산을 제외한 것’이 기부금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부금품법의 목적상 단체 내부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2호). 즉 서신이나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한 의뢰·권유가 있고 그러한 의뢰에 기인하여 재산의 출연을 하는 것, 즉 의뢰와 기부금품의 출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출연이 있으나 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가 된다.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 기부와 모집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은 일반적으로 모집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¹⁷⁾

한편 최근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

17)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1, 3면.

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대중(Crowd) + 자금모집(Funding) + 온라인(Online)이 결합된 개념으로¹⁸⁾ 기부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다.¹⁹⁾

다. 기부금 공제와의 관계

기부금품 모집이란 결국 그 단체의 재원조달방법으로서 기부금품모집법은 그 “모집”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모집에 의한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기부를 하거나 자발적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 기부금의 범위가 기부금품모집법상의 ‘기부금 모집’에 비하여 넓은 개념이다.

이러한 내용을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재원조달을 하려는 경우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또는 기부금품모집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집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지출한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이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세법상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할 수도 있다.

18) 윤민섭, 비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제문제와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2014.6, 99면. 미국의 기부·자원봉사사이트인 ‘Network for Good’에 대한 소개 및 한국형 온라인 기부포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로 김인규·이상혁·박철, 기부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기부포털의 구성요소와 기대효과,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호, 2009.11, 18~23면 참조.

19) 윤민섭, 107~108면.

제4절 요약 및 소결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설립등기 형식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형식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실질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인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등기의 근거법과 그 사업내용의 차이에 따라,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문화예술법인 등과 구별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사회복지법인의 범주는 그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사회복지법인은 실제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중점을 두는 재단법인이므로 그 구성원에 중점을 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을 구성원이나 출연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반드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므로 민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설립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설립근거가 된다.

3. 다른 법률상 단체와의 비교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가지며, 100명 이상의 사원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단법인의 형식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인과 구별된다. 즉 비영리민간단체 중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설립등기가 없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재산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도 과세할 목적 때문에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비해 개념 범위가 넓다.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비과세 할 목적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는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의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공익사업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3호), 공익법인의 개념이 사회복지법인보다 넓다.

결국 세법상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 순으로 된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부를 한 경우, 세금관계상 기부자에 대한 공제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나뉜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좀 더 크게 되어,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인세법은 단체의 종류 및 지출용도에 따라 기부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하

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바보의나눔은 법정기부금단체로 되어 있다.

비영리대상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게 기부금공제를 해 주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이다. 비영리대상민간단체의 개념상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므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기부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해 주려면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법인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발적 기부와 기부금품모집에 의한 방법이 있다. 즉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기부금을 받는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기부금공제 혜택이 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종합결론

사회복지사업법은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상 일정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비영리법인, 증여세와 상속세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공익법인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공제혜택이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바보의나눔에 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기부

금으로 취급되어 지정기부금공제를 받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이 있다.

다른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공익법인의 종류나 사업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정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형식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나 지명도 등이 큰 일부 다른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3 장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의 역할 및 경향

제1절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

제2절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제3절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과 역할

제4절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경향

3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의 역할 및 경향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력과 비영리조직,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경우 공공부문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 등과 같이 가장 체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재분배하고, 민간부문은 기부나 후원과 같은 형태로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나 스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자원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제도적 자원, 정보자원, 문화적 자원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중 현물과 현금을 포함하는 물질적 자원은 일반적으로 재정자원의 모금과 배분을 주요한 역할로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제공된다.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인 민간 비영리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모금과 배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 비영리조직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각 유형의 조직들이 민간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복지향상의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발적 활동으로서의 비영리조직의 민간자원 모금과 배분 활동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것이다²⁰⁾.

20) 이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노연희(2014) 및 노연희·이상균(2014)을 토대로 정리한다.

제1절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

민간비영리조직들에 의한 재정자원의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나 욕구의 해결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된다. 넓게는 전체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좁게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활동이 공공부문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며, 공공부문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1. 공공과 민간부문의 관계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정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활용에 대한 서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의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각 부문의 관계 하에서 민간부문의 재정자원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경우 Gronbjerg(1993)와 Young(1999)의 분류는 대체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 또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Gronbjerg(1993)는 정부의 비영리부문 의존도와 영리를 포함한 민간 활동분야에서 정부가 활동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협력(cooperation), 순응(accommodation), 경쟁(competition), 공

생(symbiosis)으로 구분하였다. 그의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경우는 사적 서비스 시장의 점유도는 매우 낮고, 공공부문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공과 민간비영리부문은 협력(cooperation)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정부가 아닌 비영리부문과 시장부문이 동시에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Young(1999)은 미국 비영리부문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를 보충적(supplementary), 보완적(complementary), 적대적(adversaries)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보충적 관계에서는 비영리부문은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며,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그 영향력이 축소된다. 보완적 관계에서는 주로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계약 체결을 통해 형성되며, 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비영리조직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충적 관계를 맺는 대표적 조직은 모금 매개조직이고, 보완적 관계를 맺는 대표적 조직은 직접 서비스 제공 조직이다. 반면, 적대적 관계는 비영리부문이 정책 변화를 위해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정부는 비영리조직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관계를 말한다.

Najam(2000)은 각 부문에 대해 정부와 비정부부문을 구분하여 각 활동의 목적과 전략 일치 여부에 따라 둘의 관계를 협력(cooperation), 보완(complementarity), 포섭(co-optation), 대항(confro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와 비영리부문은 보완적 또는 협력관계를 맺는다. 보완적 관계는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달성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두 부문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

서비스나 지역보건 관련 서비스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협력관계는 비영리부문과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성 전략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협력관계는 민간 비영리조직이 정부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고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의 경우는 재정자원이 정부에서 민간비영리조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의존적 관계를 초래할 위험이 내포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복지서비스의 전달에서 민간비영리조직들이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8).

이들의 논의는 사회복지 제공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관계는 협력, 보완적 또는 보충적이라고 보고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정부와 관계는 <표 3-1>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재정자원을 활용하는 모금 및 매개 조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의 경우 정부와 민간 관계를 Gronbjerg(1993)와 Najam(2000)은 협력관계로, Young(1999)은 보완적 관계로 분류한다. 대체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자 역할을 그리고 민간비영리부문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Young(1999)은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Najam(2000)은 민간비영리부문의 조직들이 정부의 재정자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한편, 모금매개조직과 같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Young(1999)은 정부와 민간이 보충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고, Najam(2000)은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의 분석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체 사회의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게 추구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실질적인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즉, 모금매개조직과 같은 비영리조직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지니게 되는 영역에서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 3-1〉 공공부문과의 관계와 비영리조직의 유형

관계유형	주요 활동 조직의 유형
협력 관계(Gronbjerg, 1993) 보완적 관계(Young, 1999) 협력 관계(Najam, 2000)	직접서비스 제공조직
보충적 관계(Young, 1999) 보완적 관계(Najam, 2000)	모금매개조직: 공동모금조직 및 비영리재단

노연희(2014)는 이상적으로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비영리부문간의 관계에서 정부는 기본적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며, 비영리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은 정부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복지법인들의 궁극적인 활동목표와 방식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파트너십 관계 형성 및 정부 사업의 보완 역할과 함께 노연희(2014)의 주장과 같이 정부와는 독립된 그리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을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고,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반면에 공동모금조직이나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재단들은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등에서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둘 수도 있다. 나아가 이들의 모금과 배분활동은 전문성의 확보,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즉각적 반응성과 자율성의 향상 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노연희, 2014).

2. 자발적 행동으로서 민간비영리조직의 모금과 배분활동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기부와 배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조직화된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부문의 재정자원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제공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 비영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민간 재정자원 확보는 정부의 재정자원 배분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정자원의 활용과정에서는 다양한 민간비영리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행동”, 특히 민간부문의 자발적 행동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구성원들이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사회내의 타인을 위해 행하는 원조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재정적인 보상이나 이득과는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Van til, 1988). 자발적 행동은 개인의 자발적인 타인 원조행위로서 자원봉사에서 조직화된 민간 비영리조직 참여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민간비영리부문, 제3부문 또는 사회경제(social economy) 등에 의한 체계적인 활동은 장기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사회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자원주의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Brilliant, 1990).

Van til(1988)은 자유(freedom)를 지향하는 활동으로서 체계화된 민간부문 활동은 다음의 특성을 지닌다고 제시한다. 우선 자발적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다. 대부분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지역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나 욕구 해결을 목표로 하며, 상호보호활동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는 개별 시민들의 문제 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려는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노연희, 2014).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행동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은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아닌 지역 사회나 전체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별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민주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며, 이들에게 사회문제나 욕구 해결에서 공공부문과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더불어 체계화된 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행동은 권위적이거나 위계적 구조에 순응하기보다 매우 혁신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사회변화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영리부문이 때로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판받을 때에도 그 존재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Benjamin, 2010).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의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등의 활동은 비영리부문의 자발적 행동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비영리부문의 자발적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

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노연희, 2014). 이러한 지적은 비영리조직의 모금과 배분활동이 정부와 협력적,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조직들은 정부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 또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내의 구성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직접 제공 조직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서비스수혜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금 및 배분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실질적으로 재정자원의 모금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편이고, 모금이 실행될지라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배분활동에 있어서는 대체로 정부의 활동영역과 중복된 영역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제도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Van til(1988)은 자발적 행동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부문의 자발적 행동이 공공부문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조직들이 결국은 정부에 의존적이고 때로는 종속적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이봉주 외, 2008)와 유사하다. 즉, 비영리부문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때로는 정부주도의 정책이나 제도가 초래하는 중앙집권화, 관료화 및 비인간화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를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Van til, 1988).

모금매개조직들은 공공부문과 보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정부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 조직들은 주로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원을 지역 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배분하는 활동을 한다. 이런 이유로 Brilliant(1990)는 모금매개조직, 특히 공동모금제도가 자원주의의 상징이며 민간주도의 자발적 행동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표 3-2〉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조직유형	공공부문과의 관계	자발적 행동의 특성	자발적 활동의 공통점
직접서비스 제공조직 - 사회복지관련 조직	보완적	정부서비스의 대체적 활동	지역사회네트워크 기반 시민 참여 사회적 연대감 형성 유연한 조직구조
모금매개조직 - 공동모금조직 비영리재단	보충적	정부로부터 독립적, 혁신적 활동	조직의 능력 프로그램 기획 능력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한편, 조직유형이나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활동영역이 다소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민간비영리조직들은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및 관련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네트워크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는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유연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모든 모금과 배분활동은 지역사회나 사회의 문제나 욕구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조직운영 특히 자원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투명성의 확보는 일반 시민들이나 전체 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제2절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민간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비영리조직들의 모금 활동이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한편, 모금된 자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시 배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모금 및 배분과 관련 연구결과의 검토 및 정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모금 및 배분활동의 방향성 제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1. 모금활동에 대한 논의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에 대한 논의는 주로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권혁인·주희엽·나윤빈, 2012; 손원익·이순태·박세경, 2010)와 조직의 특성과 모금활동의 성과간의 관계(김미숙·김은정, 2005; 노연희, 2004, 2011; 신현재·이석원, 2008)에 대해 논의한다. 전자의 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민간 비영리부문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져왔는데, 한국사회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

다. 권혁인 외(2012)의 연구는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들은 법제도개선, 인력양성, 연구개발, 모금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전반적인 기부문화 등의 측면에서 모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특성과 모금활동의 성과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특정 조직을 사례로 모금 경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강철희 외, 2010; 노연희 2014; 노연희·이상균, 2014)과 다수의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특성 또는 활동과 기부금의 액수, 기부행위 등 모금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김미숙·김은정, 2005; 노연희, 2004, 2011)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연희(2004)의 연구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조직에 초점을 두고 조직의 재정적 특성을 지표로 하여 자원동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의 크기나 규모 등과 같은 일반적 요인 이외의 전문성, 리더십,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관계 등은 별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기부자관리 활동은 실질적인 기부자의 기부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노연희, 2011). 이러한 결과는 해당 연구에서도 밝혔듯 모금매개조직이 아닌 직접 사회 서비스 제공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조직은 대체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 지출의 한계 등이 모금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운영이 개별 기부자의 기부행위 또는 조직의 모금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은 조직의 행정효율성, 즉 조직이 조직의 운영비를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지 또는 모

금을 하기 위한 관리비용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가 모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신현재·이석원, 2008). 미국의 IRS 자료를 기반으로 비영리조직의 행정관리비 지출과 기부금 모금과의 관련성 관계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경우 시장의 원리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효율성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Steinberg, 1983; Frumkin & Kim, 2001).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조직의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의 증가가 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Greenlee & Brown, 1999; Okten & Weisbrod, 2000).

비영리조직의 행정효율성을 다룬 연구들은 비영리조직들이 조직미션 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부자들이 아는 것이 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였다. 또, 모금을 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행정효율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재정자원을 모금하는 비영리조직의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상 행정비용의 과도한 지출과 운영상 문제 때문에 초래된다는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었다(Carman, 2011). 비영리조직의 행정효율성과 기부금의 관련성에 대한 논리를 기반으로 Kitching, Roberts & Smith(2012)은 기부자들과나 감시단체들의 압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비영리조직의 행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영리조직들은 자원분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부자들과나 감시단체의 압력을 전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지출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기부나 정부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모금활동이나 자원동원을 위한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조직들이기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규범적 행정효율성의 제고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와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며, 이러한 신뢰는 기부금 모금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운호·황창순, 2004). 신현재·이석원(2008)은 한국의 총 12개의 대표적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을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행정비용의 증가는 비영리 모금 및 배분 조직의 기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용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신현재·이석원, 2008) 대신 기부자의 선택이 모금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비영리모금 및 배분조직들이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강제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비영리조직에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모금측면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재정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상의 투명성과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재정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는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하다.

2. 배분활동에 대한 논의: 모금매개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모금매개조직들의 재정자원 배분활동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민간비영리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다양한 비영리재단의 배분활동은 비영리사회복지조직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노연희, 2009). 유사한 연구로는 사회복지공동회의 기금의 전반적인 배분경

향에 대해 논의하거나(강철희 외, 2010), 신청사업, 테마기획사업 또는 기초 복지지원사업 등 특정 유형의 배분사업에 초점을 두고 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논의한 연구들(노연희, 2009; 김가을·심선경, 2011; 석재은·김가을·이민영, 2009)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하나의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자원 배분활동이 전체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동모금회가 한국사회의 모금과 배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모금활동의 경우 민간자원의 동력 개척, 민간자원의 다양성과 안정성 구축, 나눔 문화의 확산, 모금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고, 배분활동의 경우에는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 지역복지의 증진, 사회복지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배분 시스템의 구축 등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배분활동에 존재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강철희 외, 2010).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의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등 공공부문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인구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반응성은 부족한 편이다.

다시 말해, 모금매개조직으로서 새로운 영역이나 대상인구집단의 문제 개발에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 조직들은 모금매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나 대상과 중복되는 영역에 배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강철희 외, 2010; 김가을·심선경, 2011; 노연희, 2009, 2014).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사회 및 관리자의 역량 그리고 배분과 모금에 있어서의 전문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강철희 외, 2010). 모금조직들은 모금이나 배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능력, 모금과 배분 기술, 배분 대상조직의 활동에 대한 평가 능력, 조직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역량 등도 필요하다. 조직의 내부적 관리, 리더십과 관련된 역량은 실질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다른 여타의 모금 및 배분조직들과의 관계형성에는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강철희 외, 2010). 특히 지역사회 내 다른 비영리조직과의 협력관계 실패,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는 노연희(2014)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정부에의 의존성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지역 내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형성의 실패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정과 별개로 모금이 이루어져왔음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였다(노연희, 20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법정기부금 조직인 바보의 나눔재단을 사례로 모금과 배분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개별 조직 차원에서 미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금과 배분의 전반적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노연희·이상균, 2014). 우선 바보의 나눔 재단 미션은 모금 매개조직들과 유사하지만 그 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모금은 기업모금에 치중되어 있고, 배분의 대상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 인구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별다른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조직 내부 차원에서도 모금이나 배분활동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특정 조직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금

과 배분의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 모금매개조직들은 공공부문과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수행에 의존적이기에 혁신적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모금과 배분에 있어서 조직 내부적 역량은 모금활동을 위한 조직의 신뢰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절차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같은 리더십의 역량 부족 그리고 모금과 배분을 위한 조직 내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제3절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과 역할

1.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Salamon(1992)이 제시한 비영리조직의 구분은 미국 IRS의 세금면제 조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한국의 비영리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Salamon(1992)이 제시하는 비영리조직의 구분은 어떤 조직을 민간 비영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특히 민간의 재정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따라서 먼저 Salamon(1992)이 제시한 유형에 따라 비영리조직을 구분한 후 한국의 비영리조직들을 살펴본다.

Salamon(1992)에 의하면 비영리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크게 회원조직과 공익조직으로 구분한다. 비영리 공익조직은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활동하는 회원조직과 달리 일반적으로 사회구성

원 대다수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하는, 즉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의미한다. 공익조직에는 직접서비스 제공조직, 모금매개조직, 정치옹호조직 및 종교조직이 포함된다. 공익조직 중 직접서비스 제공조직은 사회서비스, 보건,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포함되는데,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민간조직들이 이 조직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비영리조직의 유형은 민간부문의 재정자원을 모금하고, 이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금매개조직이다. 이러한 모금매개조직은 공동모금조직(연합모금조직),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재단과 전문모금활동가²¹⁾들로 구성이 된다. 공동모금조직은 미국의 United Way와 같은 조직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 내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정자원을 동원하고, 모금과정에 참여한 비영리조직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공동모금조직들이 활동을 하는데²²⁾, 이들 조직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서비스조직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다른 유형의 대표적인 모금매개조직으로는 비영리재단을 들 수 있다. 비영리재단의 경우는 그 목적이나 활동방식에 따라 모금 및 배분 전문 재단, 기업재단, 지역사회 재단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재정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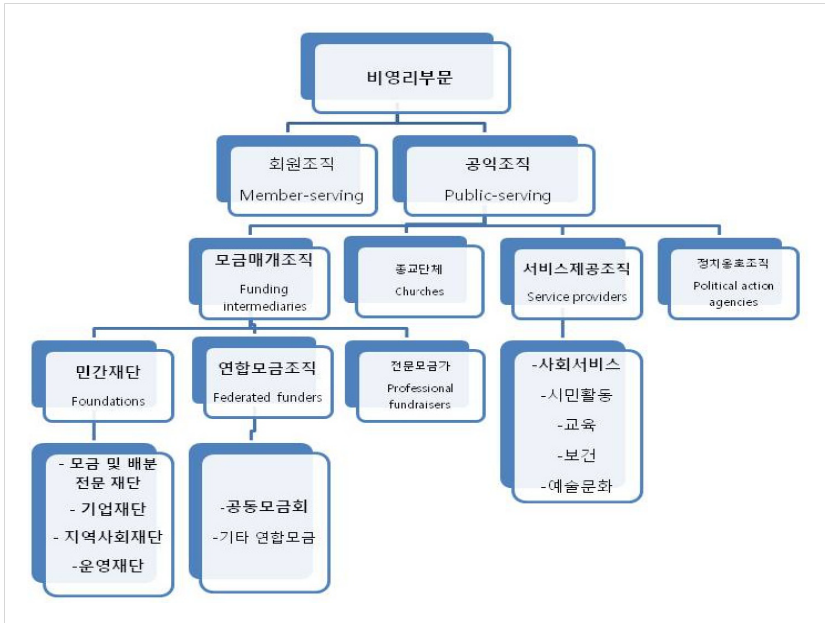
21) 미국의 모금전문가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모금전문회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비영리모금조직과 계약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한국의 경우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비영리조직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22) 예를 들어 The United Jewish Appeal, The Cancer Society, Federated Art Appeals, The Lutheran Social services 등이 대표적인 공동모금조직이다.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모금 및 배분 전문 재단(Grant making foundations)은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조직에 배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업재단(또는 기업후원재단)과 지역사회재단은 하나의 기업 또는 다수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받아 형성된 기금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운영재단은 기금 조성 및 배분 역할과 함께 조성한 기금을 조직이 스스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활용한다.

한편, 서비스제공 조직은 기금이나 기부금을 또 다른 여타의 조직에게 배분하는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금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동시에 직접 서비스 제공조직들은 모금매개조직들의 주요한 배분 대상이 되어 재정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림 3-1] 비영리조직의 유형



자료: Salamon(1992)

이 구분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재정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은 모금 및 배분 전문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명목상으로는 미국의 United Way 와 같은 공동모금조직으로 대표적인 모금매개조직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규정되어 사회복지 관련 문제나 욕구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동모금조직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동모금조직은 동일한 문제해결을 위한 비영리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회원제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의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혹은 동일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들이 회원으로 등록되

어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

모금매개조직 중 지역사회재단은 한국의 경우 정확하게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재단’이나 ‘바보의 나눔재단’ 등이 이에 포함되며, 기업이 기금을 출자하여 만든 다양한 유형의 기업재단들을 한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모금매개조직의 유형은 비영리 재단으로 Salamon(1992)의 분류에서 미국의 운영재단을 가장 일반적인 비영리재단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운영재단과 가장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은 일정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어야 설립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³⁾ 재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와 관련한 특정 목적을 지니고 조직을 운영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운영재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역할

모금 및 배분조직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모금과 배분이 전체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혹은 모금과 배분이라는 두 가지 활동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원의 모금과 배분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금과 배분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노연희(2014)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금 및 배분조직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Brilliant & Young(2004)의 구분에 따른 재정적 매개

2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① 항에 의하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경제적 규제자, 지역사회문제 해결주체 그리고 자선적 상호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내 기부자들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사이에서 자원을 연계하는 매개자(broker)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내 비영리조직의 조직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고 말한 것이다.

우선 경제적 규제자로서의 역할은 모금 및 배분조직이 동원한 자원을 다른 비영리조직들에 필요에 따라 배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또한 배분 조직들의 자원관리 능력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Carman(2011) 역시 많은 모금 및 배분 조직들이 자원배분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비영리조직들의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모금 및 배분조직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변화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정의와 같은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조사,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조직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끝으로 모금 및 배분조직의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주체로서의 역할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과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프로그램 실행과 그에 필요한 자원을 모금과 배분하는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즉, 모금과 배분과정은 문제나 욕구의 파

악, 이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는 모금과정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자원 배분과정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통합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3-3〉 비영리조직의 유형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따른 활동의 특성

역할	조직역량	기술
재정적 매개체	기술적 역량 적응역량 리더십역량	모금 및 배분의 전문성 조직분석과 평가
경제적 규제자	기술적 역량	프로그램 성과평가 재정분석 및 감사
지역사회문제 해결자	적응역량 리더십역량	지역사회욕구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기획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자선적 상호기금	리더십역량 기술적 역량	투자포트폴리오 작성 기부자 욕구분석

자료: 노연희·이상균(2014). p.136.

더불어 노연희·이상균(2014)의 연구는 상술한 역할을 공동모금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모금매개조직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동모금회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모금 및 배분조직뿐만 아니라, 일반적 비영리법인에서도 조직의 상황에 따라 재정적 매개자, 경제적 규제자, 지역사회문제해결주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과 관리역량

민간 비영리조직의 모금과 배분과정의 경향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그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된 공공부문과의 관계라는 거시적 차원과 함께 개별 조직차원에서의 비영리조직 운영

의 기본적 특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개별 비영리조직 차원의 모금과 배분 활동 관련 조직의 특성이나 관리역량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개별조직의 특성이나 관리역량을 논의하기에 앞서 모금 및 배분을 다루는 비영리조직이 미션에 기반한(mission-driven) 조직이라는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션에 기반한 조직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된 미션이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션에는 그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욕구의 정의, 조직이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조직이 중요한 기반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가치 등을 포함한다(Harding, Middleton, Montana, & Simpson, 2007). 비영리조직의 미션은 조직의 유형, 활동 영역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미션에 기반하여 재정자원의 모금과 배분활동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은 동원된 자원을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한다. 따라서 비영리재단의 재정적 측면의 기획은 조직이 제시하는 미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조직의 미션은 비영리조직이 공공부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모금과 배분을 하는 비영리조직이 조직미션을 공공부문이 활동하기 어려운 분야의 문제나 욕구해결에 초점을 두고 제시된다면 비영리조직은 공공부문과는 독립적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면에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이 공공부문이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미션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이들 조직은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두 번째로 비영리조직의 미션 기반 활동은 미션과 연관된 사회 문제나

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획과정과 모금과 배분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는 모금 매개 조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대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비영리조직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수행된다. 반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조직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에 기반하여 조직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모금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모금과 배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문제의 기획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민간의 자발적 행동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재정자원 모금 및 배분 조직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모금과 배분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구조와 역량을 지녀야 하며, 동시에 모금 및 배분을 매개하는 비영리조직의 자원관리와 관련된 신뢰 또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비영리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은 조직의 역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모금 및 배분조직들은 활동에 따라 다양한 조직역량을 필요로 하며, 조직이 추구하는 역할에 따라 필요한 조직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노연희·이상균, 2014). 모금 및 배분 활동에 중요한 역량으로는 리더십,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모금이나 배분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 지역사회 서비스 기획 및 실행 역량 및 평가 역량 등이 있다(Carman, 2011). 특히 비영리조직들이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의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재정자원의 모금과 배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획능력이 요구된다(노연희, 2014). 모금매개조직이든 직접적 서비스 제공조직이든 조직의 프로그램 기획능력은 사회문제나 욕구의 변

화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수립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능력은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에 있어서도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아가 조직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모금 및 배분 성과를 올리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른 사회구성원으로부터의 신뢰를 받을 때 달성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재정자원 제공 행동에는 자원 제공 대상이 되는 비영리조직의 특성, 재정자원 관리 방식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직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세제혜택 등을 통해 비영리부문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제4절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경향

1. 사회복지시설의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연구에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 지출현황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모금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모금조직들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살펴보았다. 해당 자료는 사회복지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모금조직의 전반적인 모금과 배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의 751개 민간모금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중 641개 조직이 응답을 하였고, 본 절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547개 조직의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²⁴⁾

24) 이 연구의 대상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고.

조사 대상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얻는 수입은 약 39억 정도로 총수입액 약 53억 중 74% 정도가 모금을 통하여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사회복지조직 특히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조직들의 경우 대체로 정부의 지원금의 비율 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는 조사대상 조직에 대규모 모금을 진행하는 공동모금회 및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재단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²⁵⁾.

모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과 같은 영리법인으로부터 모금되는 금액은 약 38억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 모금액이 16억 정도로 두 번째로 높은 액수를 보이고 있다²⁶⁾. 각 항목에 응답한 547개 조직 중 136개의 조직이 기부금을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개인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215개 조직이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조직들에게 개인은 매우 중요한 재정자원의 모금기반이 된다. 그 외의 민간단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모금을 받고 있는데 이 평균액수는 개인 및 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 응답조직수를 고려했을 때도 이러한 유형의 기부주체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5) 응답한 조직 중 법인/단체에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지출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체 분석 대상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모금매개조직보다 직접 서비스 제공조직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 2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출의 성격에 대한 응답 중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속 기관 및 사업에 지출한다고 응답한 조직(사회복지 기관을 운영 법인)과 법인/단체와 관계없는 타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한 조직(모금매개조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조직들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대규모 모금조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금액의 평균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6) 이 수치는 해당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기에 실제 모든 응답 조직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하면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표 3-4〉 민간모금조직의 수입현황(2012년)

(단위: 천원, 개)

재원유형	평균모금액	표준편차	응답조직수
정부지원금	1,695,464	6,740,754	167
법인전입금	2,248,658	9,889,623	98
모금액 합계 (1-7)	3,898,894	29,615,405	504¹⁾
1) 개인	1,607,846	18,298,048	215
2) 영리법인	3,840,174	27,079,173	136
3) 비영리법인	99,695	176,632	51
4) 민간단체	194,470	501,120	42
5) 국가기관	133,985	204,347	20
6) 공공기관	329,326	899,885	21
7) 기타	869,194	6,880,407	90
개인회비	638,214	5,225,394	169
기타(접수입)	770,294	3,265,722	431
수입총액	5,278,418	33,623,838	547

주: 1) 217개의 기관은 모금액 상세구분 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모금액 합계만 응답하였으므로, 모금액 상세구분 항목에서는 제외됨.

한국의 모금조직들은 대체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자원의 모금에 집중하고 있고, 기부금액의 양적인 면에서는 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시적인 개인의 기부금이 조직의 주요 수입을 차지할 경우 재정적 불안정성을 안을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비영리조직들이 주요 기부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정자원의 활용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영리법인 즉 기업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재정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거액을 기부하는 소수의 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져 운영상 자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소수 기업에 지나친 재정자원 의존은 정부에 지나친 의존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지출현황은 조직의 모금 재원 배분을 보여준다. 〈표 3-5〉에서 사업비지출 평균금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소방공무

원, 경찰, 군인의 유족에 대한 지원(약 49억)이고, 그 다음으로는 해외구호(약 40억), 자활, 부랑인, 긴급구호(약 28억), 한부모, 청소년,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 분야(약 22억), 노인분야(약 16억) 순이었다.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높게 나온 결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영리조직의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응답조직의 수 역시 5개에 불과해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출액이 가장 높을지라도 실제 유족에 대한 지원이 비영리조직의 일반적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외구호에 대한 지출 총액이 약 40억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규모가 큰 모금매개조직들이 대체로 해외구호, 특히 해외아동과의 결연사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자활, 노인, 가족 등 대체로 전통적 사회복지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에 모금된 자원이 활용되고 있었다.

〈표 3-5〉 민간모금조직의 지출현황(2012년)

(단위: 천원, 개)

지출항목	평균지출액	표준편차	응답 조직 수
직원인건비	387,763	1,641,548	346
운영비	328,976	1,965,036	454
기타운영비	167,172	1,122,147	129
사업비 총액 (1-9)	3,462,398	22,563,398	534
1) 노인	1,642,574	7,732,997	61
2) 유족	4,900,496	10,742,594	5
3) 장애	881,444	5,268,811	74
4) 보건의료	936,743	3,093,125	95
5) 가족, 청소년, 아동, 한부모	2,174,472	12,032,793	245
6) 주거	936,181	3,167,014	24
7) 해외	3,977,449	15,861,948	123
8) 북한	529,168	1,120,491	24
9) 자활, 부랑인, 긴급구호	2,797,492	16,176,942	120
10) 홍보, 연구 및 기타	630,378	3,239,252	281
타기관 후원(기부 등)	260,928	961,098	66
기타지출(적립금, 예비비, 이월금, 기타)	1,999,667	15,383,540	459
지출 총액	5,647,252	35,584,496	5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관련 모금조직의 수입과 지출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금과 배분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547개 조직 모두 민간 모금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대다수 비영리조직들이 모금활동을 핵심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모금을 통한 재정자원이 전체 수입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조직들의 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업 재정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그 의존성을 얼마나 감소시킬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독립성 약화와 더불어 소수의 기업이나 특정 단체의 재정자원에 모금활동을 의존하는 경우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개별 기부자 대상의 풀뿌리(grass-root) 모금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분 측면에서 사회복지관련 조직들은 유족과 해외지원 사업 외에는 대체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영역에 상당한 재정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수입현황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과는 달리 배분 영역은 오히려 정부의 사업과 주로 중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모금활동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지만, 배분활동은 주로 정부의 활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2.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 경향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10개 모금조직들을 대상으로 모금과 주요 배분 사업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조직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이 중 5개 조직이 사회복지법인이며, 이외에는 재단법인, 특수법인으로 구성되었다.

74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표 3-6〉 분석대상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

모금단체	법인형태	기부금단체 구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대한적십자사	특수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굿네이버스 ¹⁾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아름다운재단	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한국구세군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바보의 나눔	재단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주: 1) 굿네이버스의 경우 사단법인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을 포함함.

최근 한국의 10개 대규모 모금 및 배분조직들은 매년 약 1조에 달하는 민간자원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개 조직의 전체 모금액 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드비전이 약 14-16% 그리고 어린이재단과 유니세프가 약 8-9% 정도를 모금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조직의 모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 재정자원 모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은 매우 크지만 다양한 조직에 기반한 모금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지나친 모금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표 3-7〉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모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모금단체	2012년		2013년		2014년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계	980,848	100.0	1,213,459	100.0	1,269,000	1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15,990	42.4	566,824 ¹⁾	46.7	583,331 ²⁾	46.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88,999	9.1	101,842	8.4	104,972	8.3
월드비전	161,648	16.5	171,966	14.2	183,239	14.4
대한적십자사	91,376	9.3	103,400	8.5	107,614	8.5
굿네이버스	77,201	7.9	98,562	8.1	110,052	8.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92,175	9.4	107,298	8.8	116,995	9.2
아름다운재단	8,014	0.8	8,144	0.7	10,040	0.8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30,547	3.1	38,907	3.2	45,295	3.6
한국구세군 ³⁾	6,878	0.7	9,960	0.8	-	0.0
바보의 나눔	8,022	0.8	6,556	0.5	7,463	0.6

주: 1) 삼성임직원성금 1,122억 포함.

2) 세월호성금 1,118억 포함.

3) 한국구세군의 모금액은 구세군자선냄비본부의 모금액으로 함. 한국구세군의 경우 당해 모금을 하여 다음해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모금년도와 배분년도가 다르지만 편의상 모금년도 기준으로 통일하였음. 2014년 모금액은 2015년에 배분이 완료된 후 보고될 것으로 보임.

〈표 3-8〉은 조직별로 전체 수입 중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모든 조직에서는 대체로 모금이 매우 중요한 자원동원 통로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한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조직의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조직의 자료는 직접 서비스 제공조직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모금매개조직들과 달리 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 비율이 높았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비영리조직들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 모금조직들은 공공부문에 의존성이 매우 낮아 자원주의에 기반하여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공공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8〉 총수입액 중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1.2	91.8	91.3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8.7	71.5	72.7
월드비전	80.9	80.4	77.8
대한적십자사	12.1	14.1	15.2
굿네이버스	74.6	81.5	78.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93.0	94.9	91.2
아름다운재단	59.8	69.1	64.2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55.9	62.6	66.2
한국구세군 ¹⁾	100.0	100.0	100.0
바보의 나눔	98.9	98.5	98.7

주: 1) 한국구세군의 전체 수입을 파악할 수 없어 구세군자선냄비본부의 수입을 분석하였음.

3.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배분 경향

비영리 모금 및 배분조직의 배분활동은 조직의 미션에 기반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기획과정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표 3-9〉에서 각 조직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미션 및 비전²⁷⁾과 배분 사업영역을 비교한다. 조사 대상 모금매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둔 미션 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바보의 나눔 재단은 나눔문화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사회공동체 형성, 함께 가는 사회, 공동선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미션을 제시한다. 이는 Van Til(1988)이 민간부문의 자발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과

27) 상당수의 조직들이 조직의 미션만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비전을 통해서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기술하고 사업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미션과 상관 없이 전통적 사회복지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금매개조직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직접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의 재정자원을 체계적으로 모금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실행되기 어려운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배분해야 하며, 정부와 차별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자원분배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정부의 새로운 사업 촉진 등의 역할에도 한계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부에서 재정자원 분배 방향에 대해 재논의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표 3-9〉 모금 및 배분조직의 미션, 비전 및 주요 배분사업 내용

모금단체	미션	비전	배분사업 내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 발전을 도모한다. 비전: 나눔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나눔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해외·북한·기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 가도록 돕는다.	글로벌 아동복지 대표기관	국내사업: 국내 아동의 생존(빈곤가정지원), 보호(아동폭력예방 및 가정위탁 등), 발달(문화예술, 교육 등), 연구사업 해외사업: 지역개발, 교육, 보건·의료, 식수·위생, 자립지원,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월드비전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국내사업: 복지관 등의 개별사업 지원, 후원아동 지원, 사랑의 도시락 나눔, 지역지원, 국내긴급구호 지원, 문화사업 등 북한 및 해외사업: 북한구호사업, 교육사업, 식량지원, 긴급구호사업, 식수위생사업, 보건영양사업, 아동보호 등 옹호·기타사업: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대한 적십자사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고종황제 칙령 제47호)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적십자: 국민공감·국민참여·국민감동	혈액원사업, 병원사업, 혈장분획사업, 사회봉사보건사업, 남북협력사업, 구호사업, 지역보건안전사업 및 RCY 사업, 국제활동, 의료복지사업, 수품센터사업, 교육 및 인도법 보급
굿네이버스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	국내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아동권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물품 및 긴급구호, 아동권리교육 해외사업: 교육보호, 식수위생, 보건의료, 소득증대, 권리옹호, 긴급구호 대북사업: 긴급구호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¹⁾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한다.	-	영유아 생존과 발달, 기호교육과 성평등, 어린이보호, 어린이권리 옹호와 주창, 예이즈예방과 퇴치 등

모금단체	미션	비전	배분사업 내용
아름다운 재단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행동하는 시민 기 부문화의 확산자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모델 인큐 베이팅	공익활동지원(공익과 대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프로젝트, 공동체 프로젝트, 공익단체 지원, 시민 단체와 풀뿌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분사업 공모, 공익단체 활동가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빈곤과 차별):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여성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창업지원 아동청소년 지원(미래세대 지원): 아동·청소년·대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 아동·청소년 여행지원 기부문화 확산(나눔문화): 연구조사사업, 기부문화포럼 개최, 나눔교육캠페인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낸다.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치료사업, 가정 위탁 지원사업, 취약계층아동보호, 지역 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아동발달 및 교육: 빈곤아동 성장발달 통합지원, 아동권리교육, 공부방, 해외결연 아동보건 및 의료, 영양: 심리정서치료, 중증질환 치료비지원, 영양개선지원, 특수 시설 및 위생증진 아동권리옹호: 아동학대예방, 영유아살리기캠페인, 시민참여증진사업, 국제개발 정책 개선 긴급구호 및 북한사업: 식량지원, 생계 지원, 인도적 지원

주: 1) 글로벌 유니세프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함.

2) 바보의 나눔재단 사업내용은 내부자료를 분석한 노연희·이상균(2014)의 연구를 참조함.

조사 대상인 모금매개조직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영역별로 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표 3-10에서 표 3-19 참조). 각 조직별로 지출현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재정자원의 사업지출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배분액의 30-50%를 지역사회에 배분하고 있는데, 조직의 본질적 목표가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기능하는 각 지역의 사회복지조직들을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비영리조직들을 회원으로 하여 통합적인 모금과 배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강철희 외, 2010; 노연희, 2014)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닌다. 이외에는 대체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 재정자원을 배분하고 있어 모금매개조직이 정부와 차별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지출현황 중 다문화, 기타 사업 등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일지라도 다양한 영역으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별 배분액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지역사회	177,070,633	50.7	155,654,110	39.6	152,518,706	33.9
아동·청소년	84,060,991	24.1	95,104,067	24.2	94,398,045	21.0
노인	28,184,089	8.1	52,521,525	13.3	70,465,687	15.6
장애인	31,517,062	9.0	42,661,260	10.8	54,426,092	12.1
여성·다문화	17,085,926	4.9	28,317,309	7.2	35,243,029	7.8
해외·복합·기타	11,432,563	3.3	19,214,404	4.9	43,349,710	9.6
합계	349,351,264	100.0	393,472,674	100.0	450,401,269	100.0

한국구세군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사업영역에 재정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재정자원을 지출하는 사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표 3-11〉 구세군자선냄비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413,373	8.4	596,944	8.7	421,872	4.2
심장병환자 치료지원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65,641	1.3	16,765	0.2	9,360	0.1
사회복지분야별 시설 지원	1,077,387	22.0	1,103,712	16.0	1,683,338	16.9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797,386	16.3	1,193,357	17.3	516,455	5.2
재해인, 거택, 영세민구호	614,807	12.6	259,110	3.8	1,777,292	17.8
청소년 문제 예방 및 교육사업	36,500	0.7	75,220	1.1	14,467	0.1
실직자를 위한 재활, 자활지원	224,235	4.6	241,740	3.5	166,016	1.7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103,600	2.1	88,233	1.3	127,786	1.3
결식아동 지원 및 해외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348,557	7.1	268,265	3.9	176,888	1.8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	21,200	0.4	27,261	0.4	46,339	0.5
OARC(마약, 알코올환자 재활지원)	76,134	1.6	4,000	0.1	81,761	0.8
대북인도적 구호 및 개발지원	166,460	3.4	-	-	20,000	0.2
다문화가족 지원	222,952	4.6	132,041	1.9	150,571	1.5
해외지원	116,805	2.4	169,111	2.5	141,658	1.4
희망공간만들기	-	-	430,000	6.3	500,000	5.0
신한은행쪽방사업	-	-	100,000	1.5	200,000	2.0
삼성ICT 희망ICT 한마음ICT 사업	-	-	-	-	512,740	5.1
냉동급식차영양급식본죽 차량지원	-	-	-	-	265,029	2.7
베트남의료지원사업	-	-	-	-	50,002	0.5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작은도서관만들기사업	-	-	100,000	1.5	100,000	1.0
캄보디아심장병사업	-	-	235,685	3.4	208,381	2.1
드림하우스	-	-	254,019	3.7	100,025	1.0
신문교육사업	-	-	-	-	155,180	1.6
미혼모양육사업	-	-	-	-	60,007	0.6
기타국내외프로젝트	-	-	20,000	0.3	1,064,331	10.7
국민은행쪽방봉사	-	-	14,207	0.2	-	-
세탁차량 지원	-	-	249,962	3.6	-	-
물품지원사업	-	-	465,590	6.8	167,581	1.7
모집비용	611,746	12.5	833,002	12.1	1,243,201	12.5
합계	4,896,783	100.0	6,878,222	100.0	9,960,278	100.0

아름다운 재단은 차별성이 있는 조직의 미션에 따라 자원 지출현황도 다른 모금조직들과 차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배분 대상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권리 및 공동체 프로젝트 그리고 시민단체와 풀뿌리 단체 등이 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이에 대한 지출이 약 33%에서 1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빈곤과 차별 관련 사회적 약자로 전통적 사회복지 영역과 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여성가장 등이다. 즉, 아름다운 재단이 다른 조직에 비해 명시적으로 다양성, 혁신적 프로그램 지원, 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모금매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그 특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2〉 아름다운재단 사업유형별 배분액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공익활동 지원	2,220,396	33.5	976,918	15.2	1,173,531	12.4
사회적약자 지원	2,828,181	42.7	3,771,813	58.6	3,669,657	38.7
아동청소년 지원	1,107,588	16.7	810,754	12.6	1,721,746	18.2
기부문화 확산	462,650	7.0	880,378	13.7	2,909,968	30.7
합계	6,618,815	100.0	6,439,863	100.0	9,474,903	100.0

혈액원사업과 병원사업에 초점을 두는 대한적십자사는 주력사업인 혈액원 사업에 약 50%를 그리고 병원사업에 약 15%를 배분하였다.

〈표 3-13〉 대한적십자사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혈액원사업	399,731,318	61.2	369,916,539	57.8	292,875,263	49.7
병원사업	94,169,383	14.4	96,218,948	15.0	98,549,495	16.7
혈장분획센터사업	84,639,179	13.0	84,442,454	13.2	98,443,893	16.7
사회봉사사업	27,927,371	4.3	34,901,321	5.4	41,725,633	7.1
남북협력사업	607,549	0.1	2,238,876	0.3	3,245,157	0.6
구호사업	13,481,745	2.1	18,109,430	2.8	17,275,183	2.9
지역보건안전사업 및 RCY사업	13,103,733	2.0	14,600,501	2.3	15,756,092	2.7
국제활동	6,612,499	1.0	6,245,038	1.0	8,194,185	1.4
의료복지사업	6,029,194	0.9	6,833,153	1.1	6,867,360	1.2
홍보활동	3,560,765	0.5	4,045,543	0.6	3,698,446	0.6
수품센터사업	1,610,313	0.2	1,356,592	0.2	1,360,676	0.2
교육 및 인도법 보급	1,469,410	0.2	1,519,896	0.2	1,590,490	0.3
합계	652,942,459	100.0	640,428,291	100.0	589,581,873	100.0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아동을 향하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전통적 사회복지 대상 집단일지라도 차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는 아동발달과 교육 부문에 약 37%에서 52%의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빈곤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아동 권리교육으로 지원 방식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아동발달과 교육부문에 해외 결연사업이 포함되어 이 조직이 국내 아동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

〈표 3-14〉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업유형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아동보호	14,008,795	34.7	14,795,973	34.4	13,560,881	27.7
아동발달 및 교육	15,236,748	37.8	18,458,833	43.0	25,646,436	52.4
아동보건 및 의료·영양	8,241,208	20.4	6,543,782	15.2	4,266,987	8.7
아동권리옹호	806,108	2.0	745,554	1.7	618,893	1.3
긴급구호 및 북한사업	2,040,342	5.1	2,428,961	5.7	4,882,478	10.0
합계	40,333,201	100.0	42,973,103	100.0	48,975,675	100.0

유니세프의 경우는 영유아 생존과 발달 영역에 약 50%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직은 모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의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배분은 약 80% 정도 글로벌 유니세프 사업에 지출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들이 모금한 재정자원이 국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배분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외구호사업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글로벌유니세프 사업유형별 배분비율¹⁾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영유아 생존과 발달	52.5	53.4	55.6
기초교육과 성평등	20.4	20.6	19.8
어린이보호	9.8	11.3	11.1
어린이권리 옹호와 주창	10.3	9.0	8.2
에이즈예방과 퇴치	4.4	3.5	3.2
기타	2.6	2.2	2.1
합계	100.0	100.0	100.0

주: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지출한 비용은 달러로 표기되어 비율만 제시함.

구체적인 사업대상이나 영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의 경우는 대체로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지출현황을 보고한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의 경우는 약간 지출의 경향이 상이하다. 우선 어린이 재단은 약 80% 이상의 자원을 국제사업에 지출하고 해외구호사업 등에는 약 10% 내외의 지출을 하였다. 굿네이버스의 경우 국내사업에 대한 지출은 지난 3년간 약 45%정도에 35%로 정도로 감소하였고, 오히려 해외사업에 대한 지출은 약 39%정도에 47%로 증가시켜왔다. 반면 월드비전은 약 50% 이상의 자원을 해외개발 구호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조직의 사업영역별 배분현황을 보면 이들의 모금과 배분활동이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금과 배분조직의 활동이 다양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86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표 3-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국내사업비	111,290,479	85.8	113,420,000	79.7	122,554,883	84.9
해외 및 북한사업비	10,157,116	7.8	17,193,000	12.1	14,283,149	9.9
사무운영비	4,770,039	3.7	4,115,000	2.9	3,811,447	2.6
차기 이월금	3,429,824	2.6	7,614,000	5.3	3,734,695	2.6
합계	129,647,458	100.0	142,342,000	100.0	144,384,174	100.0

〈표 3-17〉 월드비전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국내사업비	49,261,174	24.6	47,380,898	22.1	50,080,792	21.3
북한 및 해외 개발 구호사업	107,229,752	53.6	107,671,511	50.3	124,143,514	52.7
옹호·기타사업	4,022,854	2.0	3,654,221	1.7	2,926,107	1.2
후원개발 및 운영비	19,905,145	10.0	26,848,354	12.5	27,044,366	11.5
차년도 사업준비금	19,504,312	9.8	28,420,447	13.3	31,183,258	13.2
합계	199,923,238	100.0	213,975,430	100.0	235,378,037	100.0

〈표 3-18〉 굿네이버스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국내사업비	47,019,825	45.4	46,112,484	38.1	49,893,336	35.7
해외사업비	40,536,470	39.1	54,782,168	45.3	66,121,426	47.3
대북사업비	1,032,042	1.0	1,233,227	1.0	1,374,967	1.0
캠페인사업비	2,852,362	2.8	3,339,606	2.8	3,751,767	2.7
조사연구사업비	1,158,985	1.1	1,660,369	1.4	1,737,129	1.2
회원복지사업비	3,618,941	3.5	3,979,734	3.3	4,523,900	3.2
행정비	2,379,706	2.3	2,717,240	2.2	3,577,468	2.6
기타지출	666,547	0.6	159,532	0.1	1,521,480	1.1
차기년도 사업준비금	4,285,524	4.1	6,888,570	5.7	7,271,347	5.2
합계	103,550,401	100.0	120,872,930	100.0	139,772,823	100.0

한편, 바보의 나눔재단은 지정/비지정 모금으로 지출현황을 보고하여 구체적인 영역별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표 3-19〉 바보의 나눔재단 사업유형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지정모금배분	2,071,558	45.6	3,828,056	54.0	3,846,367	59.7
비지정모금배분 (나눔운동배분)	1,334,091	29.4	1,906,401	26.9	1,998,646	31.0
후원물품배분	346,861	7.6	834,515	11.8	35,100	0.5
모금사업비	402,238	8.9	80,585	1.1	136,668	2.1
사무운영비	384,124	8.5	445,163	6.3	421,985	6.6
사업외 비용	410	0.0	-	-	-	-
합계	4,539,282	100.0	7,094,719	100.0	6,438,766	100.0

3. 요약: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모금과 배분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관련 모금조직들에 대한 조사자료와 10개의 대표적 모금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재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모금과 배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두 자료는 약간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조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후자의 10개 조직들은 사회복지 관련 조직이나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모금과 배분을 주요 역할로 하는 조직들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은 비영리조직의 유형에 따라 모금과 배분의 경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서비스 제공조직이 상당 포함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분석 결과 대부분의 조직들이 주로 개인과 기업에 초점을 두고 모금활동을 수

행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낮은 정부 의존성은 정부로부터 활동의 자율성은 높여주지만 많은 재원을 제공하는 특정 기업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슈를 낳았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자원 모금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뒤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기부를 정기적, 장기적 형태로 장려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복지지역에 상당한 양의 재정자원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접 서비스 제공조직들은 모금매개조직들과는 다르게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정부부문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을 보완하는 형태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조직들이 민간재정자원의 활용에서 단순하게 정부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표 모금 및 배분기관 대상의 분석결과 총 모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어 한국 사회의 전반적 모금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금액 중 절반가량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차지하고 있어 모금이 지나치게 독점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모금활동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기획 과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금 및 배분조직들은 조직의 미션과 그 사업내용을 보면, 미션의 내용은 조직마다 다소 다르지만 구체적 사업내용은 대체로 전통적 사회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모금매개조직들이 정부가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다소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구체적인 재정자원의 지출, 즉 사업대상별 배분현황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10개 중 5개 조직들은 명확하게 아동 관련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모금 수행이 아동이라는 특정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재정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음을 뜻한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모금과 배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모금과 배분 활동의 개선은 조직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모금과 배분은 사회문제나 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기획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획 능력에 따라 모금과 배분의 통합이 가능하며, 나아가 민간 부문의 자발적 행동이 전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조직역량 강화에는 비영리 조직의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와 일반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

제 4 장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현황 분석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현황 분석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현황 분석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제4절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사회복지법인의 << 재정운용 현황 분석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현황 분석

1. 조사대상: 국세청홈텍스의 공익법인²⁸⁾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의 재정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 수록된 공익법인에 대한 재정정보를 활용한다. 국세청의 인터넷 납세 서비스인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종교단체 제외) 공익법인을 공시 대상으로 한다. 공시시점은 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홈텍스에 직접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정보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대표자·이사·출연자 등 기본사항,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또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무공시공익법인이 공시대상 서류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국세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주무관청에 관련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는 공익법인을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교육, ② 학술, 장학, 자선, ③ 사회복지, ④ 의료, ⑤ 문화, ⑥ 기

28) 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를 참조하였다.

타.²⁹⁾ 본 연구는 6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복지 유형으로 분류된 공익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종교단체를 제외한 사회복지 유형의 공익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 공익법인 중, 공단과 어린이집법인을 제외한 총수는 1,491개이다.³⁰⁾

조사항목은 크게 일반사항, 총자산가액, 수입금액, 지출금액,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 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4-1>과 같다. 조사항목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은 ‘법인세법’에 의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기부금단체유형인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장에 상술되어 있다.

<표 4-1>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항목

분류	조사항목	측정변수
일반사항	소재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기관 설립년도	연도
	기부금단체유형	지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기타기부금단체

29) 그러나 각 유형들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다른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법인은 6가지 유형들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30) 법인명이 어린이집이거나 다른 조사에서 어린이집법인이라고 직접 응답한 경우만 제외하였으므로, 1,491개의 조사대상 중에는 어린이집법인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

분류	조사항목	측정변수
	사업대상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족·여성, 일반대중, 기타
수입금액	고유목적사업 기부금 수입금액	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 수입금액	원
	고유목적사업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원
지출금액	고유목적사업 사업비 지출금액	원
	고유목적사업 사업관리비 지출금액	원
고유목적사업 기부금 수입금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¹⁾ 등에 의한 모금액	원
	개인기부금	원
	행사모금액	원
	기업, 단체기부금	원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원
	기타 기부금	원

주: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생략).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국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시행일 2007.9.30]]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일반사항 현황

본 조사에서 조사된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의 일반사항은 소재지, 기관 설립년도, 기부금단체유형, 사업대상이다. 먼저, 소재지별로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의 기관 수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의 소재지별 기관 수는 서울(23.6%), 경남(10.9%), 부산(10.1%) 순으로 나타났고, 세종(0.4%), 울산(1.9%), 강원(2.2%) 순으로 낮았다.

<표 4-2> 소재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관 수

(단위: 개, %)

소재지	기관 수	비율
계	1,471	100.0
서울	347	23.6
부산	149	10.1
인천	34	2.3
대전	50	3.4
광주	55	3.7
대구	84	5.7
울산	28	1.9
강원	33	2.2
경기	132	9.0
경남	160	10.9
경북	92	6.3
충남	71	4.8
충북	40	2.7
전남	72	4.9
전북	66	4.5
세종	6	0.4
제주	52	3.5

주: 결측값 20

〈표 4-3〉은 설립년대별 기관 수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가 가장 높고, 1990년대, 1950년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이후 설립된 기관이 절반(49.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설립년대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단위: 개, %)

설립년대	기관 수	비율
계	1,488	100.0
1940년대 이전	25	1.7
1950년대	168	11.3
1960년대	65	4.4
1970년대	80	5.4
1980년대	109	7.3
1990년대	308	20.7
2000년대	583	39.2
2010년대	150	10.1

주: 결측값 3

〈표 4-4〉는 기부금단체유형별 공익법인 수로 대다수(72.7%)의 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부금단체유형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

(단위: 개, %)

기부금단체유형	기관 수	비율
계	1,490	100.0
지정	1,083	72.7
법정	187	12.6
기타	220	14.8

주: 결측값 1

사업대상은 일관되게 분류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기관마다 사업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먼저, <표 4-5>에는 사업대상에 따른 기관 수가 나타나 있다.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19.8%)이 가장 높으며, 장애인(16.8%), 아동(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관 비율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57.9%)이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절반 가량이 장애인(49.0%)과 아동(48.6%)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다문화)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23.8%로 나타났다.

<표 4-5> 사업대상별 사회복지 공익법인(복수응답)

(단위: 개, %)

사업대상	사업대상 기관 수	전체 응답 대비 비율	응답기관 대비 비율
계	4,290	100.0	-
노인	849	19.8	57.9
장애인	719	16.8	49.0
아동	712	16.6	48.6
청소년	488	11.4	33.3
가족·여성	400	9.3	30.5
외국인(다문화)	349	8.1	27.3
일반대중	326	7.6	23.8
기타	447	10.4	22.2

주: 전체기관 수 1,466, 결측값 25

다음으로, <표 4-6>은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이 분류된 8개의 사업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여성, 일반대중, 기타) 중 몇 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경우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절반 정도(52.73%)의 기관이 단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비율도 19.0%로 나타났다.

〈표 4-6〉 사업대상 수별 사회복지 공익법인 수

(단위: 개, %)

사업대상의 수	기관	비율
계	1,466	100.0
1	773	52.7
2	207	14.1
3	89	6.1
4	42	2.9
5	37	2.5
6	21	1.4
7	19	1.3
8	278	19.0

주: 결측값 25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에서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기부금 수입, 보조금 수입,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구성되며, 지출금액은 사업비와 사업관리비로 구분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부금 수입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기부금, 행사모금액, 기업·단체기부금, 모금단체·재단의 지원금,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각 법인의 결산서에는 수입과 지출의 상세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법인들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부금 수입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출금액 현황을 살펴본다.

1.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입금액 현황

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

〈표 4-7〉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총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4조 3,855억원이었으며, 이 중 기부금 수입은 1조 7,706억원(40.4%), 보조금 수입은 1조 2,383억원(28.2%),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은 1조 3,765억원(31.4%)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금액이 없는 기관이 13.4%, 기부금 수입이 없는 기관이 29.4%, 보조금 수입이 없는 기관이 50.6%,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없는 기관이 32.6%로 나타나, 사회복지 공익법인들 중 다수, 보조금의 경우는 절반이 각 항목에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금액의 분포가 우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입금액의 평균은 29억 4,524만원이었으나 중위값은 5억 7,032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수입의 경우는 평균이 11억 8,912만원이었으나 중위값은 3,565만원이었고, 보조금 수입의 경우는 평균이 8억 3,165만원이었으나 중위값은 0원이었으며,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의 경우는 평균이 9억 2,446만원이었으나 중위값은 4,546만원이었다.

(표 4-7)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금액대	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계	1,489	100.0	1,489	100.0	1,489	100.0	1,489	100.0
없음	200	13.4	437	29.4	754	50.6	486	32.6
10억원 미만	701	47.1	933	62.7	453	30.4	743	49.9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61	17.5	54	3.6	144	9.7	136	9.1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6	6.5	16	1.1	48	3.2	46	3.1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57	3.8	12	0.8	23	1.5	28	1.9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	2.7	7	0.5	19	1.3	13	0.9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35	2.4	3	0.2	8	0.5	8	0.5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8	1.2	4	0.3	7	0.5	8	0.5
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6	1.1	1	0.1	7	0.5	6	0.4
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5	0.3	4	0.3	4	0.3	3	0.2
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	0.5	0	0	4	0.3	2	0.1
100억원 이상	52	3.5	18	1.2	18	1.2	10	0.7
최대값	6,258억	1,340만원	5,833억	3,079만원	439억	7,908만원	3,925억	7,551만원
중위값	5억	7,032만원		3,565만원		0원		4,546만원
평균	29억	4,524만원	11억	8,912만원	8억	3,165만원	9억	2,446만원
총액	4조	3,855억원	1조	7,706억원	1조	2,383억원	1조	3,765억원

주: 결측값 2

(단위: 개, %)

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분석: 소재지별, 설립년대별, 기부금단체유형별, 사업대상별, 사업대상 수별(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

〈표 4-8〉에는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이 수입금액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입금액의 평균뿐만 아니라, 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의 구성비율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복지 공익법인들이 매우 이질적인 특성들을 지니기 때문이다.

〈표 4-8〉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소재지	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 고유목적사업	기관 수
계	292	120	81	92	1,469
서울	813	470	135	208	346
부산	131	10	69	52	149
인천	82	27	44	11	34
대전	132	14	48	70	50
광주	181	14	120	47	55
대구	115	12	58	44	84
울산	154	14	113	28	28
강원	169	33	41	94	33
경기	128	26	49	54	132
경남	137	7	58	72	160
경북	125	9	58	59	91
충남	139	7	71	61	71
충북	143	6	59	79	40
전남	168	10	97	61	72
전북	104	6	54	43	66
세종	30	6	18	6	6
제주	97	6	45	47	52

주: 결측값 22

〈표 4-9〉에는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역사가 긴 기관이 역사가 짧은 기관보다 수입금액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설립년도	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 고유목적사업	기관 수
계	295	119	83	93	1,486
1940년대 이전	2,600	669	292	1,639	25
1950년대	206	26	110	70	168
1960년대	628	301	221	106	65
1970년대	379	43	211	125	79
1980년대	393	203	127	63	109
1990년대	402	263	75	65	308
2000년대	141	42	36	62	583
2010년대	130	34	60	35	149

주: 결측값 5

〈표 4-10〉에는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수입금액이 다른 기부금단체에 비하여, 수입금액 평균, 특히 기부금과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 평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기부금단체 유형	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 고유목적사업	기관 수
계	295	119	83	92	1,488
지정	261	101	88	71	1,081
법정	719	348	106	265	187
기타	100	11	39	51	220

주: 결측값 3

〈표 4-11〉에는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수입금액의 크기는 사업대상이 외국인(다문화), 가족·여성, 청소년, 일반대중, 장애인, 아동, 기타,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에는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의 수가 많은 경우, 수입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사업대상	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 고유목적사업	기관 수
아동	424	216	97	111	711
청소년	556	295	110	151	487
노인	371	159	84	128	848
장애인	436	188	124	124	718
외국인(다문화)	673	362	123	188	348
가족·여성	644	344	129	171	399
일반대중	494	208	92	194	325
기타	396	134	94	168	446

주: 결측값 26

〈표 4-12〉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사업대상의 수	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 고유목적사업	기관 수
계	299	121	84	93	1,465
1	164	34	65	64	773
2	140	26	62	52	207
3	352	173	119	61	89
4	183	37	93	53	42
5	364	100	116	148	37
6	4,209	3,428	569	212	21
7	369	121	200	47	19
8	484	181	93	210	277

주: 결측값 26

2.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금액 상세 현황

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 지출금액 (상세 현황)

기부금 수입금액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단체기부금, 개인기부금, 기타 기부금, 모금단체·재단의 지원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행사모금액 순으로 많았다. 특히, 기업·단체기부금은 기부금 전체에서 47.4%, 개인기부금은 3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다수가 해당 기부금 수입을 가지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수입이 없는 공익법인은 81.4%, 개인기부금 수입이 없는 공익법인은 57.1%, 행사모금액 수입이 없는 공익법인은 96.1%, 기업·단체기부금 수입이 없는 공익법인은 72.6%, 모금단체·재단의 지원금 수입이 없는 공익법인은 89.8%, 기타 기부금 수입이 없는 공익법인은 84.0%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금액 상세현황의 분포는 <표 4-13>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4-13〉 기부금 수입금액대별 분포와 금액(상세 현황)

금액대	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기부금		행사모금액		기업, 단체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 기부금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계	1,489	100.0	1,485	100.0	1,485	100.0	1,485	100.0	1,485	100.0	1,485	100.0	1,485	100.0
없음	437	29.4	1,209	81.4	848	57.1	1,427	96.1	1,077	72.6	1,333	89.8	1,247	84.0
2억원 미만	933	62.7	182	12.3	525	35.4	51	3.4	300	20.2	116	7.8	185	12.5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4	3.6	46	3.1	44	3.0	2	0.1	24	1.6	6	0.4	17	1.1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6	1.1	7	0.5	19	1.3	3	0.2	16	1.1	6	0.4	12	0.8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2	0.8	11	0.7	6	0.4	0	0	9	0.6	5	0.3	6	0.4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	0.5	9	0.6	9	0.6	0	0	5	0.3	2	0.1	3	0.2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	0.2	10	0.7	10	0.7	1	0.1	12	0.8	5	0.3	5	0.3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	0.3	5	0.3	8	0.5	0	0	11	0.7	3	0.2	0	0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	0.1	1	0.1	3	0.2	0	0	3	0.2	3	0.2	1	0.1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	0.3	0	0	1	0.1	0	0	3	0.2	0	0	1	0.1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0	0	5	0.3	2	0.1	1	0.1	6	0.4	1	0.1	4	0.3
50억원 이상	18	1.2	0	0	10	0.7	0	0	18	1.2	5	0.3	4	0.3
최대값	5,833억원		46억원		1,534억원		43억원		4,084억원		264억원		789억원	
중위값	3,565만원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평균	11억 8,912만원		5,851만원		3억 8,267만원		660만원		5억 6,556만원		6,341만원		1억 1,608만원	
총액	1조 7,706억원		869억원		5683억원		98억원		8,393억원		942억원		1,724억원	

주: 결측값 6

(단위: 개, %)

나. 고유목적사업 기부금 수입금액 분석 (상세 현황): 소재지별, 설립년도별, 기부금단체유형별, 사업대상별, 사업대상 수별

〈표 4-14〉에는 소재지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이 기부금의 세부항목별 수입금액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소재지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소재지	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 기부금	행사 모금액	기업, 단체 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 기부금	기관 수
계	1,204	57	387	7	572	64	117	1,465
서울	4,708	130	1,534	26	2,323	249	446	345
부산	96	34	27	1	20	4	10	148
인천	270	22	91	1	70	66	20	34
대전	139	21	27	1	2	0	88	50
광주	144	39	28	0	58	3	16	55
대구	126	41	44	0	24	5	12	84
울산	137	49	25	0	21	8	34	28
강원	337	48	20	1	259	4	5	33
경기	257	70	58	1	88	18	22	132
경남	72	23	27	0	8	4	10	158
경북	90	29	36	2	13	2	8	91
충남	72	18	41	0	4	6	3	71
충북	57	35	7	8	3	0	4	40
전남	99	37	32	0	14	5	11	72
전북	62	12	20	0	2	1	27	66
세종	56	11	8	0	24	4	9	6
제주	56	20	23	1	6	6	0	52

주: 결측값 26

〈표 4-15〉에는 설립년대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수입은 다른 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설립년도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설립년도	계	「기부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 기부금	행사 모금액	기업, 단체 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 기부금	기관 수
계	1,194	59	383	6	566	63	116	1,483
1940년대 이전	6,688	257	2,206	1	3,061	104	1,059	25
1950년대	263	47	76	2	79	45	14	168
1960년대	3,005	191	2,392	67	276	17	62	65
1970년대	431	125	155	14	48	40	49	79
1980년대	2,028	51	454	1	1,389	96	37	109
1990년대	2,638	52	561	8	1,523	152	342	307
2000년대	427	35	169	2	145	34	42	580
2010년대	342	57	85	0	165	18	17	150

주: 결측값 8

〈표 4-16〉에는 기부금단체유형별 기부금 수입금액 각 항목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기타기부금단체 순으로 기부금 수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단체기부금 수입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보다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금단체·재단의 지원금 수입의 경우는 법정기부금단체보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기부금단체유형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기부금단체 유형	계	「기부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 기부금	행사 모금액	기업, 단체 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 기부금	기관 수
계	1,192	59	383	7	565	63	116	1,485
지정	1,013	72	427	9	376	70	59	1,081
법정	3,540	40	560	1	2,339	38	562	184
기타	110	8	17	0	10	52	23	220

주: 결측값 6

〈표 4-17〉에는 사업대상별 기부금 수입금액 각 항목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기부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기부금과 기업·단체기부금만을 살펴보면, 두 기부금 수입금액 모두 가족·여성, 외국인(다문화), 청소년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법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사업대상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사업대상	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 기부금	행사 모금액	기업, 단체 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자원금	기타 기부금	기관 수
아동	2,156	94	749	13	955	122	223	712
청소년	2,947	122	994	18	1,386	119	308	488
노인	1,594	73	490	10	742	91	188	848
장애인	1,874	92	591	13	880	76	222	719
외국인(다문화)	3,618	125	1,135	24	1,779	137	418	349
가족·여성	3,439	122	1,173	22	1,567	186	369	400
일반대중	2,076	121	733	22	873	131	196	326
기타	1,345	103	554	18	392	110	168	446

주: 결측값 27

〈표 4-18〉에는 사업대상 수별 기부금 수입금액 각 항목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의 수가 많은 경우, 수입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사업대상 수별 기부금 세부수입금액의 평균(상세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사업 대상의 수	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 기부금	행사 모금액	기업, 단체 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 기부금	기관 수
계	1,209	59	388	7	574	64	118	1,464
1	343	24	97	1	200	9	12	771
2	264	44	58	1	96	40	25	207
3	1,727	92	811	3	448	322	51	89
4	370	48	110	8	111	12	81	42
5	1,000	158	337	1	255	61	188	37
6	34,283	172	7,643	40	22,309	202	3,917	21
7	1,209	134	56	31	815	124	49	19
8	1,807	132	829	25	459	147	215	278

주: 결측값 27

3.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지출금액 현황

가.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사업비, 사업관리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은 총액이 4조 85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가 60.6%, 사업관리비가 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비와 사업관리비 지출이 없는 법인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공익법인 중 36.5%가 사업비 지출이 없었으며, 24.7%가 사업관리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 분포는 〈표 4-19〉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4-19〉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대별 분포와 금액

(단위: 개, %)

금액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계	1,488	100.0	1,488	100.0	1,488	100.0
없음	220	14.8	543	36.5	367	24.7
10억원 미만	718	48.3	717	48.2	776	52.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3	15.7	91	6.1	159	10.7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8	6.6	43	2.9	62	4.2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55	3.7	26	1.8	36	2.4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	3.0	12	0.8	29	2.0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30	2.0	7	0.5	17	1.1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9	1.3	7	0.5	14	0.9
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1	0.7	4	0.3	12	0.8
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7	0.5	5	0.3	1	0.1
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	0.3	3	0.2	3	0.2
100억원 이상	48	3.2	30	2.0	12	0.8
최대값	5,209억 4,210만원		4,774억 9,445만원		2,099억 9,748만원	
중위값	5억 958만원		7,206만원		1억 3,297만원	
평균	26억 9,206만원		16억 3,179만원		10억 6,027만원	
총액	4조 85억원		2조 4,297억원		1조 5,787억원	

주: 결측값 3

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 분석(사업비, 사업관리비): 소재지별, 설립년대별, 기부금단체유형별, 사업대상별, 사업대상 수별

〈표 4-20〉에는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이 지출금액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세종이 지출금액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비 1단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관리비가 몇 단위가 필요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비 대비 사업관리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0.33으로 가장 낮고 전북이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소재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소재지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사업비	기관 수
계	271	165	106	0.64	1,468
서울	744	561	183	0.33	346
부산	119	53	66	1.25	149
인천	79	30	49	1.63	34
대전	159	56	103	1.84	50
광주	152	99	54	0.55	55
대구	105	36	68	1.89	84
울산	146	78	68	0.87	28
강원	161	48	114	2.38	33
경기	125	46	79	1.72	132
경남	131	33	98	2.97	160
경북	128	60	68	1.13	91
충남	128	24	105	4.38	70
충북	123	18	106	5.89	40
전남	148	39	108	2.77	72
전북	98	12	86	7.17	66
세종	26	6	20	3.33	6
제주	91	20	72	3.60	52

주: 결측값 23

〈표 4-21〉에는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역사가 긴 기관이 역사가 짧은 기관보다 지출금액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비 대비 사업관리비의 비율은 1950년대 설립된 기관이 1.49로 1990년대 설립된 기관이 0.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에는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비와 사업관리비 모두 법정, 지정, 기타기부금단체 순으로 높았다. 사업비 대비 사업관리비의 비율은 기타기부금단체(2.26), 지정기부금단체(0.64), 법정기부금단체(0.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설립년대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설립년대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비	기관 수
계	270	164	107	0.65	1,485
1940년대 이전	2,650	1,726	924	0.54	25
1950년대	182	73	109	1.49	168
1960년대	549	368	181	0.49	65
1970년대	358	153	205	1.34	79
1980년대	291	128	163	1.27	109
1990년대	355	268	87	0.32	308
2000년대	139	78	62	0.79	582
2010년대	121	66	55	0.83	149

주: 결측값 6

〈표 4-22〉 기부금단체유형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기부금단체 유형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비	기관 수
계	270	163	106	0.65	1,488
지정	236	139	97	0.70	1,081
법정	668	463	205	0.44	186
기타	99	30	68	2.27	220

주: 결측값 3

〈표 4-23〉에는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대상이 외국인(다문화), 가족·여성, 청소년, 일반대중, 장애인, 아동, 기타, 노인 순으로 수입금액 평균이 높았으며, 이 순위는 수입금액의 순위와 동일하다. 사업비 대비 사업관리비의 비율은 기타, 일반대중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법인이 가장 높고, 외국인(다문화), 가족·여성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법인이 가장 낮았다.

〈표 4-23〉 사업대상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사업대상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비	기관 수
아동	393	275	118	0.43	711
청소년	514	367	147	0.40	487
노인	346	222	124	0.56	847
장애인	402	256	146	0.57	718
외국인(다문화)	629	456	173	0.38	348
가족·여성	600	435	165	0.38	399
일반대중	452	286	166	0.58	325
기타	382	238	144	0.61	446

주: 결측값 27

〈표 4-24〉에는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의 수가 많은 경우, 지출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대비 사업관리비의 비율도 대체적으로 사업대상의 수가 적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사업대상 수별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

(단위: 천만원, 개)

사업대상의 수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 사업비	기관 수
계	273	166	107	0.64	1,464
1	145	61	84	1.38	772
2	129	47	82	1.74	207
3	335	230	105	0.46	89
4	152	84	69	0.82	42
5	301	187	114	0.61	37
6	3,687	3,219	468	0.15	21
7	398	288	110	0.38	19
8	467	297	170	0.57	277

주: 결측값 27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익법인 1,491개를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254개의 기관(17.0%)만이 이메일 조사에 응답하였는데, 그 중 116개의 기관은 모금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38개의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본다.

질문내용은 <부표 3-1>과 같이 11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모금목적, 모금전담부서(인력), 모금관리, 기부자관리, 모금액 사용방식, 배분형태,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배분전담부서(인력), 사업성과측정, 그리고 정보공개이다.

1. 모금 관련 빈도분석

<표 4-25>에는 “귀 법인이 민간 모금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60.6%의 기관이 “정부지원금에서 부족한 운영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으로 응답하였으며, 16.1%의 기관이 “주요 재원마련이 민간모금에 기반하고 있음(모금기관)”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많은 법인이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4-25〉 모금목적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37	100.0
① 주요 재원마련이 민간모금에 기반하고 있음	22	16.1
② 현재 사업의 규모 확장을 위해	6	4.4
③ 정부지원금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83	60.6
④ 정부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1	8.0
⑤ 기타	11	8.0
중복응답	4	2.8

주: 결측값 1

“귀 법인(기관)은 모금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는 〈표 4-26〉에 나타나 있다. 79.8%의 기관은 모금관련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0.2%의 기관은 모금관련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모금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29	100.0
모금전담부서 있음	26	20.2
모금전담부서 없음	103	79.8

주: 결측값 9

〈표 4-27〉는 “귀 법인(기관)은 모금관련 전담인력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이다. 76.2%의 기관이 모금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6.9%의 기관이 모금전담인력이 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앞서 60.6%의 기관이 정부지원금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모금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반면 모금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7〉 모금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30	100.0
모금전담인력 없음	99	76.2
1명	22	16.9
2명	4	3.1
3명	1	0.8
4명	2	1.5
20명	1	0.8
65명	1	0.8

주: 결측값 8

〈표 4-28〉에는 “귀 법인(기관)의 모금을 관리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83.8%의 기관이 “인맥을 통한 모금”으로 응답하였으며, 76.5%의 기관이 “모금을 위한 전화·우편물(편지, 소식지) 발송”으로 응답하였고, 64.7%의 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활동”으로 응답하였다. 많은 모금이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적인 모금의 활성화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 법인(기관)의 기부자를 관리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는 〈표 4-29〉에 나타나 있다. 98.5%의 기관이 “영수증 발급”으로 응답하였으며, 82.5%의 기관이 “모금금품 회계 내역 공고”으로 응답하였고, 81.0%의 기관이 “감사편지(전화, e-mail, 문자 등)”으로 응답하였다. 보다 기부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금방법으로 “정기소식지, 뉴스레터 제공”은 62.0%로 나타났으며, “기부자(단체) 답례품 증정”은 23.4%로 나타났다.

〈표 4-28〉 모금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응답항목	빈도	응답기관 대비 비율
응답기관	136	
① 모금을 위한 전화·우편물(편지, 소식지) 발송	104	76.5
②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활동	88	64.7
③ SNS를 통한 모금 캠페인	13	9.6
④ 포털사이트를 통한 모금 캠페인	19	14.0
⑤ 방송프로그램(사랑의 리퀘스트 등)의 모금 캠페인	8	5.9
⑥ 행사캠페인(바자회, 일일호프 등)	50	36.8
⑦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방송	6	4.4
⑧ 고액모금프로그램	2	1.5
⑨ 거리모금	8	5.9
⑩ 인맥을 통한 모금	114	83.8
⑪ 크라우드 펀딩	5	3.7

주: 결측값 2

〈표 4-29〉 기부자관리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응답항목	빈도	응답기관 대비 비율
응답기관	137	
① 영수증 발급	135	98.5
② 감사편지(전화, e-mail, 문자 등)	111	81.0
③ 기부자(단체) 답례품 증정	32	23.4
④ 모금금품 회계내역 공고	113	82.5
⑤ 후원자 감사 행사	50	36.5
⑥ 모금내용 공고(소식지, 홈페이지 등)	101	73.7
⑦ 정기소식지, 뉴스레터 제공	85	62.0
⑧ 기부자 네이밍	13	9.5
⑨ 기부자 언론보도	22	16.1

주: 결측값 1

2. 배분 관련 빈도분석: 모금액 사용방식, 배분형태,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배분전담부서, 배분전담인력

〈표 4-30〉은 “귀 법인(기관)은 민간 모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십니까

니까? (금액, 구성비)”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이다. “법인/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충당”이 평균 62.5%로 나타났으며, “당 법인/기관이 운영하는 연계/산하 기관에 지출”이 평균 25.2%로 나타났다. 법인들은 주로 법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간에 모금액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0〉 모금액 사용방식 관련 빈도분석

(단위: %, 개)

응답항목	평균	해당 항목에 배분하는 기관 수
계	100.0	
① 다른 기관/법인에 대한 배분	3.6	12
② 당 법인/기관이 운영하는 연계/산하 기관에 지출	25.2	64
③ 법인/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충당	62.5	110
④ 기타	8.6	31

주: 절측값 8

〈표 4-31〉에는 “귀 법인(기관)의 배분형태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78.8%의 기관이 “법인/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충당”으로 응답하였으며, 53.3%의 기관이 지정기탁(사용처가 지정된 모금)”으로 응답하였고, 48.9%의 기관이 “당 법인/기관이 운영하는 연계/산하 기관에 지출”으로 응답하였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법인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31〉 배분형태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응답항목	빈도	응답기관 대비 비율
응답기관	137	
① 공모선정을 통해	32	23.4
② 지정기탁(사용처가 지정된 모금)	73	53.3
③ 긴급지원	30	21.9
④ 법인의 기준에 따라 임의 선발한 개인이나 기관에 배분	27	19.7
⑤ 당 법인/기관이 운영하는 연계/산하 기관에 지출	67	48.9
⑥ 법인/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총당	108	78.8
⑦ 기타	9	6.6

주: 결측값 1

“귀 법인/단체의 민간 모금액의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중 어디에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는 〈표 4-32〉에 나타나 있다. 73.3%의 기관이 “법인의 설립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응답하였으며, 29.6%의 기관이 “국가사업 중 미흡한 부분에 사용/배분”으로 응답하였고, 24.4%의 기관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업에 사용/배분”으로 응답하였다. 법인들은 설립목적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모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응답항목	빈도	응답기관 대비 비율
응답기관	135	
① 국가사업 중 미흡한 부분에 사용/배분	40	29.6
②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업에 사용/배분	33	24.4
③ 법인의 설립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영역	99	73.3
④ 시기별 이슈나 현장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영역	18	13.3
⑤ 대부분 지정기탁으로 배분의 우선순위가 없음	22	16.3
⑥ 기타	8	5.9

주: 결측값 3

〈표 4-33〉은 “귀 법인/단체의 민간 모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결정되니까?(기부자 지정기부금 제외)”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이다. 72.4%의 기관이 “기관장/이사회의 결정”으로 응답하였으며, 21.6%의 기관이 “해당 팀/담당자의 결정”으로 응답하였다.

〈표 4-33〉 모금액 사용처 결정방식 관련 빈도분석(중복응답)

응답항목	빈도	응답기관 대비 비율
응답기관	134	
① 기관장/이사회의 결정	97	72.4
② 별도 배분/기부금 사용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10	7.5
③ 해당 팀/담당자의 결정	29	21.6
④ 기타	14	10.4

주: 결측값 4

〈표 4-34〉에는 “귀 법인(기관)은 배분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84.6%의 기관은 배분관련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5.4%의 기관은 배분관련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4〉 배분전담부서 유무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23	100.0
배분전담부서 있음	19	15.4
배분전담부서 없음	104	84.6

주: 결측값 15

“귀 법인(기관)은 배분관련 전담인력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는 〈표 4-35〉에 나타나 있다. 80.5%의 기관이 배분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1.9%의 기관이 배분전담인력이 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모금액 사용처의 결정이 주로 기관장/이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표 4-33>의 결과와 상통하는 것이다.

<표 4-35> 배분전담인력 수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18	100.0
배분전담인력 없음	95	80.5
1명	14	11.9
2명	5	4.2
3명	1	0.8
4명	1	0.8
16명	1	0.8
20명	1	0.8

주: 결측값 20

3. 사업성과측정과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표 4-36>는 “귀 법인/단체는 사업/배분의 성과측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이다. 57.7%의 기관이 “각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평가를 실시한다”으로 응답하였으며, 24.8%의 기관이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으로 응답하였다. 72.3%의 기관이 사업의 결과보고서와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지 않은 기관(24.8%)이 사업성과측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사업성과측정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37	100.0
① 각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평가를 실시한다.	79	57.7
② ①에 더하여 수혜자 만족도 조사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20	14.6
③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34	24.8
④ 사업의 계획에서 실행, 성과보고를 위한 특정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예; BSC, Logic model, 기관개발모델 등)	0	0.0
⑤ 사업/배분의 성과측정을 위해 별도 연구를 병행한다.	0	0.0
중복응답	4	2.8

주: 결측값 1

〈표 4-37〉에는 “정부에 대한 필수보고 외에 재정결산 내역과 사업집행, 배분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빈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44.4%의 기관이 “재정결산서, 사업별 결과보고, 배분대상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으로 응답하였으며, 43.0%의 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범위 외는 별도 공개는 하지 않는다”으로 응답하였다. 절반 가량(44.4%)이 사업수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정보공개 관련 빈도분석

응답항목	빈도	비율
계	135	100.0
① 재정결산서, 사업별 결과보고, 배분대상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60	44.4
② 공개하지만 제시된 항목을 모두 하지 못하고 있다.	17	12.6
③ 법으로 정해진 범위 외는 별도 공개는 하지 않는다.	58	43.0

주: 결측값 3

제4절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부금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고경환 외, 2011, 2012, 2013). 기부금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기관,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및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며, 상세내용은 〈표 4-38〉과 같다.

〈표 4-38〉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기관유형	개 념	근 거 법	관리주체
전문/법정/특례 지정기부금 단체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기부금품 모집기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 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하는 기관	기부금품모집법	행정자치부

자료: 행정안전부(2012. 1),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고경환 외(2012)에서 재인용.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기부금단체는 2,387개의 기관이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만을 포함하고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제외한 696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 모든 조사가 완료된 기관은 305개이었다. 본 연구는 이 305개의 기관 중 2013년에도 추적조사가 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변수에 걸쳐

값이 없는 21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³¹⁾

1. 분석방법 및 기술통계량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cross-section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영향도 존재하며 또한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델을 설계하였다.

$$d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gamma C_i + u_i$$

dY_i 는 2013년과 2011년의 로그화한 기부금 수입의 차액이며, X_{1i} 는 모금전담 근로자 수와 모금겸무 근로자 수의 벡터이며, X_{2i} 는 후원자 관리방법의 벡터이다. 이렇게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2011년에 모금인력이나 후원자 관리방법이 많은 기관이 적은 기관보다 기부금 수입이 더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또는 덜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통제변수로는 2011년의 기부금 수입을 통제하였다. 그 이유는 어떠한 거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부금 수입이 더 많은 기관이 더 적은 기관보다 기부금 수입의 변화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통제한 변수들은 2011년의 전체 근로자 수, 2011년 기부금 외 수입의 로그값이다. 이에 더해, 2011년을 기준으로 설립년도, 기부금단체 지정년도, 법정기부금모집여부, 지정기부금모집

31)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는 표본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여부를 통제하였다. 또한 대규모 기관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부금 수입이 1,000억이 넘는 기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속변수는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2011년과 2013년에 기부금 수입이 모두 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조사가 되지 않아서 0으로 코딩되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물가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하여 2013년의 기부금 수입을 2011년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 중 후원자 관리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다: ① 감사편지와 우수 개인/기관에 감사패 증정, ② 모금내용공고와 모금금품 사용내역 공고, ③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후원자 관리로 감사편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감사편지와 우수 개인/기관에 감사패 증정의 변수가 1이 되고 나머지 후원자 관리 변수는 0이 되도록 코딩하였다.

〈표 4-39〉에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2011년 기부금 수입의 평균은 6억 2,322만원이었으며, 2013년 기부금 수입의 평균은 8억 5,868만원이었다.³²⁾ 그리고 모금전담 근로자 수는 평균 0.41명이었으며, 모금겸무 근로자 수는 평균 0.87명이었다. 후원자 관리는 감사편지와 우수 개인/기관에 감사패 증정을 하는 기관은 전체의 74%였으며, 모금내용공고와 모금금품 사용내역 공고를 하는 기관은 전체의 85%였으며,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를 하는 기관은 전체의 42%였다.

분석방법으로는 Ordinary Least Squares를 사용하였으며, robust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Model 1은 모든 독립변수 중에서 후원자 관리

32) 2011년 기부금 수입의 평균이 2013년 기부금 수입의 평균보다 낮지만 로그값은 더 높은 이유는, 계산상의 오류가 아니며 로그값 변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변수가 제외되었으며, Model 2는 모금인력이 제외되었다. Model 3은 제외된 변수가 없다.

〈표 4-39〉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2011년 기부금 수입 (천원)	623,224	1,348,505
2013년 기부금 수입 (물가지수 적용; 천원)	858,675	4,520,813
2011년 기부금 수입 (log)	11.89	1.83
2013년 기부금 수입 (log)	11.65	1.98
기부금 수입 (log) 의 변화량	-0.24	1.51
모금전담 근로자 수 ¹	0.41	1.71
모금겸무 근로자 수 ²	0.87	1.04
감사편지와 우수 개인/기관 감사패 증정 ³	0.74	0.44
모금내용공고와 모금품품 사용내역 공고	0.85	0.36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	0.42	0.50
2011년 기부금 외 수입 (log)	11.07	3.63
전체 근로자 수	11.47	25.68
설립년도	2001	12.39
기부금단체 지정년도	2007	7.51
법정기부금 모집여부	0.22	0.42
지정기부금 모집여부	0.89	0.31
사례 수	217	

주 : 1. 183개의 기관은 모금전담인력수가 0이었다.

2. 34개의 기관은 모금겸무인력수가 0이었다.

3. 16개 기관은 해당 후원자 관리방법을 모두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 분석결과 및 한계

분석 결과, Model 1 모금인력은 기부금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전담인력의 1명이 증가할 때 기부금 수입이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영향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금겸무인력이 증가할 때는 기부금 수입이 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영향은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odel 2에서는 후원자 관리 중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를 할 때

기부금 수입이 2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영향은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odel 3에서는 모금전담 근로자 수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Model 1보다 2.6%p 감소하였다. 감소한 영향은 후원자 관리 변수로 인해서 미치는 매개변수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금겸무 근로자 수와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 변수들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Model 1과 Model 2에서의 회귀계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모금전담 근로자 수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의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의 회귀계수만 유의하게 (비록 10%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나타난 이유는, 후원자를 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 변수의 회귀계수가 Model 3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크기도 작아진 것은,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 변수가 결국 모금인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로 사료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2011년 기부금 수입이 높은 기관일수록, 기부금 변화량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부금 수입이 1% 증가할 때, 기부금 변화량은 0.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조사표를 통해서 조사된 자료이므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둘째, 분석대상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서, 기관 특성 및 기관 규모에 따라 모금인력과 후원자 관리가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효과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금인력과 후원자 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인 모델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40〉 기부금 수입금액 변화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회귀계수	표준오차 (robust)	회귀계수	표준오차 (robust)	회귀계수	표준오차 (robust)
(모금인력) 모금전담 근로자 수 모금겸무 근로자 수 (후원자관리) 감사편지와 우수 개인/기관 감사패 증정 모금내용공고와 모금품 사용내역 공고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 주최 (통제변수) 2011년 기부금 수입 (log) 2011년 기부금 외 수입 (log) 전체 근로자 수 설립년도 기부금단체 지정년도 법정기부금 모집여부 지정기부금 모집여부 소재지 (15개의 디미변수) 상수항	0.126 ^{***} 0.146+	0.035 0.087			0.100 ^{***} 0.119 0.147 -0.058 0.221 -0.340 ^{***} -0.006 0.001 -0.009 0.008 -0.305 -0.167 (생략) 5.789	0.037 0.087 0.148 0.152 0.161 0.076 0.031 0.003 0.011 0.018 0.212 0.325 26.822
결정계수 사례 수	0.24 217		0.24 217		0.26 217	

주: p^{***}<.001, p^{**}<.01, p^{*}<.05, p+<.10

제 5 장

모금과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제1절 모금측면의 개선방안

제2절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5

모금과 배분측면의 << 개선방안

제1절 모금측면의 개선방안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생존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대신 조직의 구성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기부나 회비, 모금, 정부 및 민간단체의 재정지원 등을 받는다. 따라서 비영리조직, 특히 모금매개조직의 재원획득은 조직의 본래 목적사업 대신 별도의 기금조성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재원 조달의 원천은 정부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면서 사회서비스조직에게도 재정자원 동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학문적 측면에서도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재원 확보 전략 구축 관련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민간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조직관리 강화와 관계망 형성, 모금전략과 단계별 관리 강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조직관리 강화와 관계망 형성

모금 개선을 위한 조직 관리는 내부조직 관리와 외부 조직들과의 협력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조직과 관련해서는 먼저 후원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이는 후원 전문 인력 및 조직은 곧 구체적 모금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금전담인력과 모금점무인력이 각각 1명 증가할 때

기부금 수입은 각각 12.6%, 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사회복지 시설의 평균 근로자 수는 11.5명, 후원전담 인력은 0.4명, 후원 겸무 인력은 0.9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각각 3.5%, 7.8%에 지나지 않았다. 즉, 자원동원 활동에 있어서 주요 재정지원자들과 의견교환 및 의견 반영, 개별적 전략 수립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후원자 개발은 필수적 직무로 설정되어야 하며, 담당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모금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내부조직 관리의 과제이다. 사실상 이 부분은 배분 활동에서 수행되지만 배분활동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은 다시 이후 모금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모금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모금 전담 인력 및 부서의 운영은 조직의 관계망 형성에도 활용되는 핵심 요소이다. 외부의 다양한 조직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을 도모하는 일에는 상당한 관계 형성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금단체 운영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단체, 학교, 기업, 종교, 수혜 대상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모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기금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다양한 연계 기관들과 모금 활동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실제 이들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모금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모금활동의 효과성 및 상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모금활동에 필요한 인력 모집의 차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복지활동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사회적 유능인사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파트너십의 지속과 확장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모금기관들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도

출할 수 있도록 모금 기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모금활동은 한시적이고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 자원의 효과적 동원과 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표 모금 및 배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전체기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의 조직들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체계적 모금 전략 및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위 10개 모금 기관에 모금이 집중되어 있는 등 모금을 위한 거대조직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소수 기관의 모금 독점 구조는 모금에는 효과적이지만 모금조직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든다. 개별 모금기관들과 모금시기를 사전에 조율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각자의 차별화된 모금 및 홍보 전략을 통해 연중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2. 모금전략과 단계별 관리 강화

모금 과정은 지원 대상 선정, 모금 전략 수립, 홍보 및 캠페인 그리고 사후 정리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모금 캠페인 기간의 80%는 준비와 개발에 소요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 선정 및 모금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영철, 2004). 앞서 조사 결과에서도 모금 캠페인 및 특별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은 42%, 모금 내용공고와 모금품 사용내역 공고를 하는 기관은 85%에 이르는 등 각 기관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더 효과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노력을 제시해 본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은 곧 비영리조직의 지향과 관련된다.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정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즉각적 반응성을 높이며, 이러한 발견점을 정부에 제안하여 새로운 사회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정부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원 대상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금 전략 수립은 선의의 자선적 기부를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해야 한다. 모금활동과 기부행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요소 및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금활동의 다양성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모금의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사회복지자원을 효과적,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전략적 마케팅수립이 필요하다. 즉 모금원 및 모금방법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모금활동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모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특별행사, 개인 및 기업 대상 모금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획에 지역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주민들과의 제휴 및 조직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홍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개인 및 기업체와 직접 접촉을 통한 홍보, 가두홍보, 기타 홍보 등이 활용된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각 매체의 광고시간이나 지면 기부를 유도한다면 자연스런 참여와 비용 절약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클리브랜드 공동모금회는 광고회사 사장을 홍보위원장으로 추대하여 무료로 홍보의 자문을 받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정효정, 2008). 또한, 유명 인사들의 기부행위를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도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 모금행사 등은 한시적인 모금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사회복지의식 증진과 기부문화 확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끝으로 모금활동을 마친 후의 회계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결산

자료 공시를 통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과거 일부 단체들이 불법적인 기부금 사용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앞의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모금 내용 공고 및 모금품 사용내역을 공고하는 기관은 대부분이었으나, 재정결산서, 사업별 결과 보고, 배분대상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조직은 44.4%로 나타났다. 사용 내역을 공고하는 조직은 많지만 상세한 정보 공개는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금을 마무리한 후에는 모금 내용과 성과를 정확히 공시하고, 이후 배분 및 예산의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모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배분 측면의 개선방안

배분은 모금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모금의 목표를 성취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또한 민간기금을 조성한 목적이며, 어렵게 조성된 기금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때, 비영리기관의 소명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배분활동은 모금 및 배분 조직의 존재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배분측면에서 공공부문과 차별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와 비교할 때 배분영역의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직접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조직의 경우 정부와 보완적

관계, 즉 정부가 선정한 지원 대상 중 정부의 영향력이 약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반면, 모금매개조직은 정부와 보충적 관계, 즉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대상을 중심으로 조직의 미션에 근거하여 복지 수혜 대상자를 찾고 지원하여야 한다. 배분대상은 모금 전반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을 내포하며,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상징을 담아내야 한다.

상위 10개 모금 및 배분기관은 민간모금을 독점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모금매개조직이 제시하는 조직의 미션과 배분사업 내용은 대부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사회복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금매개조직의 배분 대상 선정은 국가복지 틈새와 새로운 복지 선도영역(또는 개혁영역)을 파악하여 민간부문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석재은, 김가을, 이민영, 2009; 정효정, 2008).

비영리조직은 공공부문과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차별적인 비영리조직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비영리조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복지지원 영역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정부정책으로 제도화가 추진된 후 지원을 철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조직의 미션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혁신적 영역에 배분하는 비영리조직은 상대적으로 규모와 재정구조가 크고 안정적이기보다 영세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1,491개 모금기관 중에는 개혁영역을 지원하는 기관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공시기관들이 자산 5억원 이상,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회복지 공익법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영역에 배분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선도적 모금매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 한다는 점

에서 비판 받을 만하다.

미국의 대표 모금기관인 United Way는 본연의 모금매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민간비영리 조직의 연합 형태인 United way는 모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높이고 각 기관의 미션 달성은 개별적으로 이루고 있다. 이는 국내 대표 모금매개조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앙집권적으로 모금과 배분활동을 집행하는 것과 구별된다. 우리의 모금조직들도 공공부문과 차별성 있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복지 영역을 개발 및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배분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배분대상을 선정하고 배분 활동을 실행하는 과정은 곧 조직의 미션과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배분 대상의 선정에는 공고, 프로포절 모집, 철저한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개최 그리고 선정 결과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배분활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배분형태에 대한 본문 4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체계적 선발과정을 통해 배분대상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배분 선정 방식을 보면 ‘조직 직속기관 지원(78.8%)’, ‘기부자 지정기탁(53.3%)’, ‘조직과 연계된 기관에 지원(48.9%)’에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모 선정(23.4%)’, ‘법인의 기준에 따라 선발(19.7%)’에는 낮게 나타났다.

배분 대상 선정의 합리성과 전문성 향상은 배분실행위원회 운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사업 분야별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사회, 기업 및 단체, 종교, 학교 등의 인적자원이 골고루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배분 체계상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박태룡,

2003; 이영철, 2002). 하지만 제4장에서 분석된 모금액 사용처 결정 방식을 보면, 배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는 7.5%인 반면, 기관장/이사회 의 결정(72.4%), 담당자의 결정(21.6%)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모금기관들이 배분을 결정함에 있어 자의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배분위원회 구성을 통한 배분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이다.

나아가 배분 실행 이후 평가 역시 중요한 단계임에도 현실적으로 일부 기관들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외부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기관은 14.6%, '내부평가만 하는 기관'은 57.7%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측정 노력을 하지 않는 기관'은 24.8%,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특정모델을 사용하거나 별도 연구를 진행한다'는 기관은 전무하였다. 배분 평가 과정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비영리조직들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평가에 사용된 자료를 익년의 모금 및 배분 자료로 활용할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합리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가 결과 및 자료는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하여 다음 기부에도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류기형, 2005).

배분 활동 평가결과는 기부자들에 대한 책임 이행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모금 및 배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합리적 계획과 운영에도 필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배분선정 과정에 이어 배분 평가 역시 배분위원회를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배분위원회는 평가자이자 배분 활동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분위원회의 역할은 이 사회의 최종 결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 사전심의 결정 역할, 배금 관련 핵심 사항 자문 역할, 사업 집행에 대한 검증 기능 등이 있다(이태수, 2008).

그러므로 배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모금매개조직에게 세세한 배분 사업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배분성과를 포함한 종합적 사업 내용 공시도 요구할 수 있다. 즉, 배분 자체의 전문성 및 절차적 투명성 개선뿐만 아니라 모금과 배분 전반의 투명성까지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

- 강철희(1996). 미국공동모금회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복지운동 제2집.
- 강철희(2000).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사, 구조와 기능. 김성의 편, 한일지역복지비교연구(pp.341~366)에서. 서울: 나남출판.
- 류기형(2005).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6, pp.47~75에서 재인용.
- 강철희(2002). 미국공동모금기구에서의 조직간 권력관계와 지정기부 프로그램에 의한 기금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 pp.1~30.
- 강철희·최재성·한동우(2010). 한국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고경환 외(2011). 2010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외(2012). 2011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외(2013). 2012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세청(2015). 공익법인세무안내.
- 굿네이버스(2013). 2012년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
- 굿네이버스(2014). 2013년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
- 굿네이버스(2015). 2014년 굿네이버스 연차보고서.
- 권기창·김진숙·이은정(2010). 한국의 민간사회복지자원 조사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권혁인·주희엽·나운빈(2012). 국내 펀드레이징 확산을 위한 주요 고려요인과 전략과제. 대한경영학회지, 25(8), pp.3145~3164.
- 김가을·심선경(2011). 민간의 사회복지재원할당을 위한 아젠다 설정과정 사례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2), pp.23~54.
- 김미숙·김은정(2005).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원 동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pp.5~40.
- 김연수·이광석(2011).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pp.25~51.

김운호·황장순(2004). 비영리조직의 내부 거버넌스와 조직효율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험과 교훈. 한국비영리연구, 3(1), pp.145~169.

김완석·정지선(2014). 소득세법론. 광고.

김완석·황남석(2015).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노연희(2004). 비영리 사회 서비스 조직의 재정자원 동원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23, pp.113~137.

노연희(2006).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자원동원 효과성과 조직의 관리능력. 한국사회복지학, 58(3), pp.5~26.

노연희(2009). 비영리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도시연구, 10(3), pp.213~232.

노연희(2011). 사회복지조직의 기부자관리 및 조직의 기부자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pp.1~31.

노연희(2014). 복지서비스 지역화를 위한 공동모금제도 개선과제: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1), pp.209~239.

노연희·이상균(2014). 김수환 추기경의 영성안에서의 사회복지실천: 바보의나눔재단의 역할과 사회적 성과. 인간연구, 26, pp.123~168.

대한적십자사(2013). 2012년도 사업 및 결산 설명서.

대한적십자사(2014). 2013년도 사업 및 결산 설명서.

대한적십자사(2015). 2014년도 사업 및 결산 설명서.

류기형(2005).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6, pp.47~75.

바보의나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0~2011년, 2012~2013년, 2013~2014년.

박태룡(20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배분과정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 pp.95~114.

박훈·채현설(2014). 상속·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변영선(2015).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와 관리실무. 삼일인포마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3). 2012년 연간보고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4). 2013년 연간보고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5). 2014년 연간보고서.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2013). 2012년 세이브더칠드런 연차보고서.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2014).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차보고서.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2015). 2014년 세이브더칠드런 연차보고서.
- 손원익·이순태·박세경(2010).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송덕수(2013). 신민법강의. 박영사.
- 석재은·김가을·이민영(20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복지지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225~251.
- 신현재·이석원(2008). 비영리단체의 행정효율성이 기부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12(3), pp.275~296.
- 아름다운재단(2013). 2012년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 아름다운재단(2014). 2013년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 아름다운재단(2015). 2014년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 오정수(2000). 지역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효과적인 모금과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0, pp.222~245.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3). 2012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연차보고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4). 201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연차보고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5). 2014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연차보고서.
- 이봉주·김용득·김문근(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점과 대안. 서울: EM커뮤니티.
- 이영철(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성화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 pp.87~114.
- 이영철(2002). 지역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발표집, pp.183~210.
- 이영철(20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배분사업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pp.1~23.

이태로·한만수(2014). 조세법강의. 박영사.

이태수(2008).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5(2), pp.289~328.

이창희(2013). 세법강의. 박영사.

정효정(2008). 공동모금회 운영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pp.159~18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3). 어린이재단 2012년 사업보고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4). 어린이재단 2013년 사업보고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5). 어린이재단 2014년 사업보고서.

한국구세군(2012). 2011년 구세군 자선냄비 나눔보고서.

Benjamin, L. M. (2010). Mediating accountability: How nonprofit funding intermediaries us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why it matters for governance.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3(4), pp.594~618.

Brilliant, E. L. (1990). *The United Way: Dilemmas of Organized Cha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rilliant, E. & Young, D. R. (2004). *The changing identity of federated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8(3/4), pp.23~46.

Carman, J. G. (2011). What you don't know can hurt your community: Lessons form a local United Way.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21(4), pp.433~448.

Connolly, P. & York, P. (2003). *Building the capacity of capacity builders: A study of management support and field building-organizations in the nonprofit sectors*. Philadelphia: The Conservation Company.

Frumkin, P. & Kim. M. T. (2001). Strategic positioning and the

- financ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efficiency rewarded in the contributions marketpla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 pp.266~275.
- Greenlee J. S. & Brown, K. L. (1999). The impact of accounting information on contributions organizations.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13, pp.113~128.
- Gronbjerg, K. A.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arding, D., Middleton, J., Montana, S., & Simpson, R. A. (2007). *An empowering approach to managing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itching, K. A., Roberts, A. A. & Smith, P. C. (2012). Nonprofit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A study of marginal versus average spending. *Journal of Governmental & Nonprofit Accounting*, 1, pp.A1~A19.
- Kramer, R. M. (1981). *Voluntary agency in the welfare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jam, A. (2000). The Four-C's of Third Sector-Government Relations Cooperation, Confrontation, Complementarity, and Co-optation.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Vol. 10, No. 4, pp.375~396.
- Okten, C. & Weisbrod, B. A. (2000). Determinants of donations in private nonprofit marke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5(2), pp.255~272.
- Salamon, L. (1992).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 Steinberg, R. (1990). Taxes and giving: new finding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2),

pp.204~224.

Van Til, J. (1988). *Mapping the Third Sector: Voluntarism in a Changing Economy*. N.Y.: Foundations Center.

Young, D. R. (1999). Complementary, supplementary or adversarial: Atheoretical and historical examination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U.S. In E. T. Boris and C. E. Steurele(Ed.),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challenges of civil society*.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구세군자선냄비, <http://www.jasunnambi.or.kr/nr>

국제구세군, <http://www.salvationarmy.org/ihq/Mission>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대한적십자사, http://www.redcross.or.kr/redcross_morgue/redcross_morgue_publicannouncement_result.do

바보의 나눔, http://www.babo.or.kr/sub1_2_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https://www.sc.or.kr/guide/spirit/01.do>.

아름다운 재단, <http://www.beautifulfund.org/?c=4/17/67>

유니세프(글로벌), http://www.unicef.org/about/who/index_mission.html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active/business_01.asp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business/worldvision/about_worldvision/mind_worldvision.asp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about.childfund.or.kr>

부록 1.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4. 2. 2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2. 2. 2.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

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14. 2. 21.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014. 2. 21. 개정)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2014. 2. 21. 개정)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014. 2. 21. 개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014. 2. 21. 개정)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2014. 2. 21. 개정)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2. 21.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2. 2. 2.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삭제, 2001. 12. 31.)

마. (삭제, 2001. 12. 31.)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2. 8. 3. 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012. 2. 2. 개정)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012. 2. 2.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2012. 2. 2. 개정)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2012. 2. 2.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010.

12. 3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010. 12. 30. 개정)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마.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10. 12. 30. 개정)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010. 12. 30. 개정)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2010. 12. 30. 개정)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2011. 3. 31. 신설)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 15. 신설)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2013. 2. 15. 개정)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2013. 2. 15. 개정)

나.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2014. 2. 2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3. 2. 15. 신설)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2013. 2. 15. 신설)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2013. 2. 15. 신설)

법인세법집행기준 24-36-1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1.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

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아. 가부터 사까지의 지정기부금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

2.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부금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

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그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영 제36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제2호 나 및 다에서 “사용개시일”이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6.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2014.11.30. 개정).

부록 2. 법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010. 12. 30. 개정)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0. 12. 30.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10. 12. 30. 개정)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2011. 12. 31. 개정)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10. 12. 30. 개정)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3. 1. 1. 개정)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10. 12. 30. 개정)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11. 7. 25.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0. 12. 30. 개정)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2014. 1. 1. 개정)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2010. 12. 30. 개정)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0. 12. 30. 개정)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10. 12. 30. 개정)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2010. 12. 30. 개정)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10. 12. 30. 개정)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10. 12. 30. 개정)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2010. 12. 30. 개정)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10. 12. 30. 개정)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10. 12. 30. 개정)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010. 12. 30. 개정)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10. 12. 30. 개정)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10. 12. 30. 개정)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2010. 12. 30. 개정)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10. 12. 30. 개정)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2010. 12. 30. 개정)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³³⁾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0. 12. 30. 개정)

33) ④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항변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010. 12. 30.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2010. 12. 30. 신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2010. 12. 30. 신설)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0. 12. 30. 개정)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010. 12. 30. 개정)

한편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모금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법인세법집행기준 24-0-6 【법정기부금 전문모금기관】

법 제2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기부금 모집·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① 한국학교(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자목)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교
3.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② 전문모금기관(법 제24조 제2항 제6호)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외부감사를 받을 것
3. 결산서류등을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4.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5.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80%이상이며, 기부금 모집·배분·법인관리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이하
6.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25%이하이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영 제36조의 2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③ 공공기관 등(법 제24조 제2항 제7호)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등 공익 목적
3.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
4.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부록 3.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 조사

(부표 3-1) 모금과 배분에 대한 추가조사

구분	질문	응답항목
모금목적	Q. 귀 법인이 민간 모금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주요 재원마련이 민간모금에 기반하고 있음 (모금기관) ② 현재 사업의 규모 확장을 위해 ③ 정부지원금의 부족을 배꾸기 위해 ④ 정부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⑤ 기타
모금전담 부서(인력)	Q. 귀 법인(기관)은 모금관련 전담 부서나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1) 전담부서 ① 유 ② 무 2) 전담인력 ① 유(명) ② 무
모금관리	Q. 귀 법인(기관)의 모금을 관리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모금을 위한 전화·우편물(편지, 소식지) 발송 ②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활동 ③ SNS를 통한 모금 캠페인 ④ 포털사이트를 통한 모금 캠페인 ⑤ 방송프로그램(사랑의 리케스트 등)의 모금 캠페인 ⑥ 행사캠페인(바자회, 일일호프 등) ⑦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방송 ⑧ 고액모금프로그램 ⑨ 거리모금 ⑩ 인맥을 통한 모금 ⑪ 크라우드 펀딩
기부자 관리	Q. 귀 법인(기관)의 기부자를 관리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영수증 발급 ② 감사편지(전화, e-mail, 문자 등) ③ 기부자(단체) 답례품 증정 ④ 모금품 회계내역 공고 ⑤ 후원자 감사 행사 ⑥ 모금내용 공고(소식지, 홈페이지 등) ⑦ 정기소식지, 뉴스레터 제공 ⑧ 기부자 네이밍 ⑨ 기부자 언론보도
모금액 사용방식	Q. 귀 법인(기관)은 민간 모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십니까? (금액, 구성비)	① 다른 기관/법인에 대한 배분 ② 당 법인/기관이 운영하는 연체/신학기관에 지출 ③ 법인/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충당 ④ 기타

구분	질문	응답항목
배분형태	Q. 귀 법인(기관)의 배분형태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공모선정을 통해 ② 지정기탁(사용처가 지정된 모금) ③ 긴급지원 ④ 법인의 기준에 따라 임의 선별한 개인이나 기관에 배분 ⑤ 당 법인/기관이 운영하는 연계/신하 기관에 지출 ⑥ 법인/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운영비에 해당 ⑦ 기타
모금액 사용 우선순위	Q. 귀 법인/단체의 민간 모금액의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중 어디에 있습니까?	① 국가사업 중 미흡한 부분에 사용/배분 ②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업에 사용/배분 ③ 법인의 설립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영역 ④ 시기별 이슈나 현상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영역 ⑤ 대부분 지정기탁으로 배분의 우선순위가 없음 ⑥ 기타
모금액 사용자 결정방식	Q. 귀 법인/단체의 민간 모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결정되니까? (기부자 지정기부금 제외)	① 기관장/이사회 결정 ② 별도 배분/기부금 사용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③ 해당 팀/담당자의 결정 ④ 기타
배분전담 부서(인력)	Q. 귀 법인(기관)은 배분관련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1) 전담부서 ① 유 ② 무 2) 전담인력 ① 유(명) ② 무
사업성과 측정	Q. 귀 법인/단체는 사업/배분의 성과측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① 각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평가를 실시한다. ② ①에 더하여 수혜자 만족도 조사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③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사업의 계획에서 실행, 성과보고를 위한 특정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예: BSC, Logic model, 기관개발모델 등) ⑤ 사업/배분의 성과측정을 위해 별도 연구를 병행한다.
정보공개	Q. 청부에 대한 필수보고 외에 재정결산 내역과 사업집행, 배분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재정결산서, 사업별 결과보고, 배분대상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② 공개하지만 제시된 항목을 모두 하지 못하고 있다.

부록 4. 기부금 및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홈텍스에 공시된 사회복지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및 사업비에 대한 설명요인을 Ordinary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기부금의 설명요인은 자산보유현황, 수입금액(보조금, 기타사업수입), 지출금액(사업비, 사업관리비), 기부금단체유형, 설립년도, 사업대상의 수, 주소이며, 사업비의 설명요인은 자산보유현황,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사업수입), 지출금액(사업관리비), 기부금단체유형, 설립년도, 사업대상의 수, 주소이다.

기부금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부금이 없는 법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업비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업비가 없는 법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속변수의 분석 결과만을 살펴보면, 기부금의 경우 자산보유현황, 보조금, 사업비, 사업관리비, 사업대상 수는 기부금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의 경우 자산보유현황, 기부금, 보조금, 기타사업수입, 사업대상 수는 사업비와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관리비는 사업비와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4-1〉 기부금의 설명요인 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산보유현황 (log)	0.124***	0.019
보조금 (log)	0.018**	0.006
기타사업수입 (log)	-0.006	0.007
사업비 (log)	0.039***	0.006
사업관리비 (log)	0.028***	0.007
법정기부금단체 (기준더미: 지정기부금단체)	-0.553***	0.158
기타기부금단체	-0.397+	0.206
설립년도	-0.721	0.577
설립년도 제곱	0.000	0.000
사업대상 수	0.149***	0.019
부산 (기준더미: 서울)	-1.424***	0.196
인천	-1.238***	0.306
대전	-1.043**	0.324
광주	-0.963**	0.300
대구	-1.309***	0.240
울산	-0.900*	0.365
강원	-0.562	0.385
경기	-0.833***	0.188
경남	-1.550***	0.188
경북	-1.607***	0.237
충남	-1.519***	0.252
충북	-1.678***	0.370
전남	-1.379***	0.256
전북	-1.571***	0.262
세종	-1.642*	0.723
제주	-1.521***	0.301
상수항	733.721	571.345
결정계수	0.35	
사례 수	1031	

주: p***<.001, p**<.01, p*<.05, p+<.10

〈부표 4-2〉 사업비의 설명요인 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산보유현황 (log)	0.069***	0.018
기부금 (log)	0.041***	0.008
보조금 (log)	0.076***	0.006
기타사업수입 (log)	0.038***	0.007
사업관리비 (log)	-0.036***	0.008
법정기부금단체 (기준더미: 지정기부금단체)	-0.286+	0.167
기타기부금단체	0.019	0.192
설립년도	-1.079+	0.583
설립년도 제곱	0.000+	0.000
사업대상 수	0.129***	0.020
부산 (기준더미: 서울)	-1.240***	0.203
인천	-1.665***	0.349
대전	-1.083**	0.352
광주	-0.498+	0.300
대구	-1.172***	0.235
울산	-0.396	0.426
강원	-0.745+	0.386
경기	-0.972***	0.198
경남	-1.382***	0.198
경북	-1.132***	0.239
충남	-1.446***	0.270
충북	-0.909*	0.390
전남	-1.228***	0.281
전북	-1.719***	0.301
세종	-3.324***	0.799
제주	-1.522***	0.347
상수항	1083.963+	577.684
결정계수	0.35	
사례 수	932	

주: p***<.001, p**<.01, p*<.05, p+<.10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0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연구 2015-0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김대중
연구 2015-0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김동진
연구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연구 2015-0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정영호
연구 2015-07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최정수
연구 2015-0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연구 2015-0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ned-up Services)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박세경
연구 2015-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간 부양 분담방안	김유경
연구 2015-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연구 2015-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프랑스&미국 편	임완섭
연구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해식
연구 2015-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연구 2015-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고제이
연구 2015-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연구 2015-17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
연구 2015-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신화연
연구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
연구 2015-20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연구 2015-21-01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이삼식
연구 2015-21-0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형
연구 2015-21-03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신윤정
연구 2015-21-04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연구 2015-21-07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선우덕
연구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연구 2015-21-09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원종욱
연구 2015-21-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류정희
연구 2015-21-11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 예측	송태민
연구 2015-22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이상영
연구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연구 2015-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여유진
연구 2015-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정해식
연구 2015-26	정책결정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김미곤
연구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5-2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강혜규
연구 2015-2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5-30-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김미숙
연구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방안	김정선
연구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삼식
연구 2015-3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노대명
연구 2015-33	201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이수형
연구 2015-34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연구 2015-3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송태민
연구 2015-36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동향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연구 2015-37	보건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주요국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변화와 동향연구	김대중